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유광흠 Yu, Kwang Heum

진현영 Jin, Hyun Young

김혜련 Kim, Hye Ryeon

(a u r i

AURI-정책-2011-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지은이: 유광흠, 진현영, 김혜련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11년 10월 30일, 발행: 2011년 10월 31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7,000원, ISBN: 978-89-93216-75-2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 ! 연구책임 유광흠 연구위원
- ! 연구진 진현영 연구원
 김혜련 연구원
- ! 연구보조원 박예솔, 정순홍, 김샤름

-
- ! 연구심의위원 김상길 (주) 에이텍종합 건축사사무소 대표
 전영철 (주) 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대표
 황학용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무관
 권영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 연구자문위원 김진욱 (주) 에이앤유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상무
 김효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요약

건축서비스산업의 의미와 가치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진입을 앞두고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맞물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진화 또한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갖추기 위하여,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고, 이에 상응하는 실제적인 노력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자, 더욱이 관련 산업인 건설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은 국가 미래를 위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진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고, 또한 건축문화 창달을 통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로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법률 마련의 의의

높은 잠재력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낮은 형편이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주요 지식서비스산업 진흥정책에서

도 건축서비스산업이 제외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고, 관련된 제도적 기반 또한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근간이 되는 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우선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산업적 정의, 국내외 여건 및 시장현황, 관련 법률과의 관계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타 진흥법 사례 및 기본법 입법사례 등을 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서의 기본체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세부 조문을 작성하고 입법취지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및 시장 현황

『건축기본법』은 ‘건축’을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는 『건축기본법』의 개념을 따라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과정에서 요구되는 제반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서비스’를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있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활동은 ①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로서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③ 토지 및 건축물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설계, 감리, 자문, 지도, 유지관리·리모델링·개보수(기획 및 설계에 한함) 등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4조 원이고, 1.3%에 해당하는 100인 이상 대형업체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의 매출에 30.5%를 차지하는 등 매출이 대형사무소로 편중된 현상을 보인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의 분포 지역도 서울과 경기도로 편중되어 지역적 불균형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사업체당 매출액 및 1인당 매출액은 유사 산업에 비해 건축서비스산업 중 특히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산업이 저조하여 낮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평균 임금도 유사분야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는 등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다.

국내 여러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되어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은 국제적으로 낮은 경쟁력을 나타낸다. 우선 OECD 27개국 중 건축설계업체당 매출규모가 21위로 OECD 국가의 평균 0.77\$M/업체, G7국가의 평균 매출 0.81\$M/업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0.43\$M/업체로 절반 수준의 업체당 매출액을 보인다. 일부 국내 대형건축사사무소의 매출 규모는 해외 우수 건축사무소 규모와 비견될 수 있으나 해외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육성전략이 요구된다. 현재 건축서비스산업의 세계 시장은 발주방식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One Stop Shop(OSS) 제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이의 결과로 프로세스관리(사업관리) 능력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자금과 관련하여 국제금융시장의 활용 능력과 국가차원의 정치적·외교적 역량까지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지구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녹색건설이 세계 시장에서도 부각되며, 세계 시장구조의 변화로는 매출규모의 중심이 신흥개발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생산 현황을 보면 사전기획, 컨설팅, 설계활동 등 전문적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주 매출원으로, 특히 매출원의 61.5% 이상이 기본설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건축시장은 유럽 건축회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며 이들은 지사를 두거나 현지 전문업체들과 제휴를 맺는 형태로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다. 유럽 건축회사의 미국 진출과 동시에 미국 건축서비스회사의 해외시장 진출도 활발하여 2008년에는 17억 8천 5백만 달러에 육박하는 해외시장 매출을 달성하였다.

건축서비스산업의 관련 법과의 관계성 및 정책 현황

현행 법제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되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 시 법적 관계를 검토해야 할 범으로는, 우선적으로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을 분석하여 각 법률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업무영역을 확인하고 건축서비스산업과 각 법률 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건축기본법』의 경우 제명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본법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이 어떠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해 다룰 뿐 직접적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산업적 개념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주 대상으로 하는 법률로서 건축공사도 건설공사의 일부로 보기는 하나 건축서비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건설기술의 정의 중 건축설계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설기술관리법』내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성립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산업적 업무를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업무로 명시하였는데, 이는 건축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범위와 불일치한다. 건축서비스와 관련성을 가지는 여러 법률들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현행 법률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을 배제하였거나 일부 부분적으로 포함한 상태로, 건축서비스라는 개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업구조의 재편을 위해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집약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펴고 있다. 그 중 엔지니어링산업을 신성장 동력 지식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여기에 건축서비스산업은 제외된 상태이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산업임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식’과 ‘회계예규’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용역 및 공사의 계약 방식에 따라 계약을 맺고 있으며, 건설공사 발주 시

설계기준에 대한 계약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비를 별도로 산정 받지 못하는 등 계약구조상의 문제가 존재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법률의 기본적 목적, 즉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 법 이념간의 상호관계에 기초하여, 진흥법으로서 가지는 입법유형, 제명 등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국내 타산업의 진흥법 입법례를 검토해본 결과, 법률상의 진흥은 조성·개발·육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여러 진흥법이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진흥책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산업 진흥법이라는 입법 성격에 따라 공통적인 기본체계를 보였으며,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산업 인프라 조성, 수요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등이 대부분의 진흥법 중 기본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체계]

부문	주요내용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산업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 표준화 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장려 등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 관련 기구(협회, 단체 등) 설치에 관한 규정 • 관련업무 종사자의 지원 내지 보호정책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진흥원 설립

산업적 차원에서 도출한 진흥법의 기본체계 위에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따른 조문을 선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기반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조문을 우선적으로 추가하였다. 현행 턴키위주의 발주방식이 창의성과 예술성이 중요시되는 건축물에는 적용의 한계를 가지므로 기본설계 기술제안, 설계공모 등 가치중심의 발주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주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내용을 법안에 포함하였다. 여러 산업분야에서 표준화가 시행되기는 하지만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우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도입과 빠른 확산을 위하여 표준화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식산업으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므로 표준화 기반조성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조문에 포함하게 되었다.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과 더불어 건축서비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선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포함하였다.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에서는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문화를 대표하는 지역 건축물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우수건축물 지정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였으며, 설계자가 건축공사 단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의도 구현’ 조문을 포함하여 설계자의 지속적인 참여가 가능함으로써 시공과정에서도 설계자의 의도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법률안에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의 일상적 삶의 공간이자 도시의 랜드마크인 공공건축물이 건축문화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순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건축의 품격제고’를 법문 안에 포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공공건축의 발주, 기획 및 관리, 디자인관리 등을 지원하는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세계화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우리의 전통건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진 도시, 그리고 삶의 질적 차원에서의 접근으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으로 관련된 제도들은 단지 전통건축 보존을 위한 문화재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명시된 수준이다. 이런 여건을 개선하여 보다 일관성 있는 전통건축 보존 및 활용 정책이 가능하도록 ‘한옥진흥기본계획 수립’, ‘한옥 등의 등록’, ‘한옥 등의 조성·정비 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가한옥센터 설치’ 등의 규정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담았다.

위의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법안은 9개의 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4장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5장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 제6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그리고 보칙, 부칙, 별칙이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구분	조문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실태조사 •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 제9조 발주방식의 다양화 •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제14조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 제15조 창업지원 •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구분	조문
제4장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제20조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등 • 제21조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 제23조 공공건축의 품격제고 • 제24조 공공건축 지원센터
제5장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한옥 등의 등록 • 제27조 한옥 등의 조성·정비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제6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 제30조 출연금 • 제31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3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33조 보고 및 검사 • 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 • 제35조 건축문화특별회계의 설치
제7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 조세의 감면 • 제37조 자료제출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3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조 벌칙 • 제41조 과태료
제9장 부칙	

주제어 : 건축서비스,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6
2. 연구의 방법	8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9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9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9
2) 산업적 관점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 의의	14
2.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 현황	16
1)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16
2) 시장구조의 불균형 심화	17
3) 국제경쟁력 취약	20
3.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현황	25
1)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25
2)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27
3)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31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35
1)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률 현황	35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제도	40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방향	43

1. 진흥법 성립 요건	43
1) 일반적인 법률의 목적	43
2) 진흥법의 법적 성격	44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기본체계 도출	47
1) 진흥법 입법례의 기본체계 검토	47
2)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법 기본체계	49
3) 건축서비스산업 특성에 따른 사항	53
3. 건축문화 향상 기본내용 도출	59
1)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기초 논의	59
2)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	61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및 해설79

1. 총칙	79
2.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85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96
4.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104
5.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109
6.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114
7. 보칙	121
8. 벌칙	123
9. 부칙	124

제5장 결론125

1. 연구의 의의	125
2. 후속 과제	131

참고문헌	137
------------	-----

그림출처	139
------------	-----

Summary	141
---------------	-----

표차례

[표 2-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표	11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산업의 구분	11
[표 2-3] 미국 NAICS 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 위치	13
[표 2-4] 국내 설계시장 추정치	16
[표 2-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규모 및 증감율	17
[표 2-6]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2005년)	17
[표 2-7] 2005년 지역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18
[표 2-8] 영업수지 현황	19
[표 2-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20
[표 2-10] 미국과 한국의 업체별 비교	23
[표 2-1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27
[표 2-12]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31
[표 2-13] 직원수에 따른 단독기업체 설립현황	32
[표 2-14] 직원수에 따른 단독기업체 수입액 현황	32
[표 2-15] 『건축기본법』의 용어정의(제3조)	36
[표 2-16] 『건설산업기본법』의 용어정의(제2조)	38
[표 2-17] 『건설기술관리법』의 용어정의(제2조)	39
[표 3-1] 진흥법 및 유사한 법률 입법 사례	45
[표 3-2] 산업관련 진흥법의 주요내용	48
[표 3-3] 산업관련 진흥법제에 포함된 공통적인 입법내용	49
[표 3-4]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법의 기본체계	50
[표 3-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체계	51
[표 3-6] 발주방식의 구분	53
[표 3-7]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건축의 정의	67

[표 3-8] 주요 선진국의 자국문화 향상 노력	73
[표 3-9]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증 한옥에 대한 정의	74
[표 3-10]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증 한옥마을에 대한 정의	74
[표 3-11] 전통건축 보전·계승과 관련 법률	76
[표 5-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발의 후 진행 상황	125

그림차례

[그림 1-1]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3
[그림 1-2] 상해 푸둥지역	5
[그림 1-3] 연구흐름도	8
[그림 2-1]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12
[그림 2-2]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15
[그림 2-3]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21
[그림 2-4] G7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21
[그림 2-5] 링크트 하이브리드	24
[그림 2-6] 매출 총액에 대한 서비스 분류(2010년)	28
[그림 2-7]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 · 진입 현황 및 전망(2010년)	29
[그림 2-8] 드영 기념박물관	30
[그림 2-9] 설계사무소의 매출 추이	33
[그림 2-10] 미디어테크	34
[그림 2-11] 신현대미술관	42
[그림 3-1] 국제수영센터	52
[그림 3-2] BIM 작업 인터페이스	55
[그림 3-3] 이탈리아 콜로세움	58
[그림 3-4] 알리노이주 메인스트리트 지침 예시	63
[그림 3-5] 캔터키주 메인스트리트 사례	63
[그림 3-6] 서울시립미술관	64
[그림 3-7] 구마모토 현립미술관 분관	66
[그림 3-8] 무주군 진도리 마을회관(건축가 정기용의 설계안 스케치)	69
[그림 3-9] 런던 시청	70
[그림 3-10] 2011년 CABE 및 디자인위원회 합병 이후 조직 위치	72

[그림 3-11] 전통한옥호텔 라궁	75
[그림 3-12] 전주 한옥마을	78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개편에 대응

-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선진형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필요
 -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진입과 이에 따른 산업·문화적 변화에 부합하는 선진형 산업으로의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시점
 -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발전법』 개정으로 건축서비스 산업은 지식서비스산업에 포함되어 신성장 동력으로서 발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소프트웨어형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며, 유사산업인 건설업과 비교 시 부가가치율과 고용창출 능력이 모두 높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율은 60.1%(건설업 44.6%), 고용창출 능력은

41.8%(건설업 27%)임¹⁾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경쟁력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수준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건설 산업에 종속되어 후진적인 수준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추정규모는 대략 4조 원으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업계 및 종사자의 여건이 유사 산업과 비교 시 열악한 상황
 - * 사업체당 매출액은 엔지니어링 산업이 건축설계 산업에 비해 2.8배 높음. 1인당 매출액에 있어 엔지니어링 산업은 8,100만 원, 건축서비스산업은 7,500만 원으로, 특히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이 7,400만 원으로 가장 낮음²⁾
 - * 동종산업의 평균 임금은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2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2천 2백만 원으로 가장 낮음³⁾
- 건축서비스산업의 낮은 세계시장 점유율
 - 전 세계적으로 건축서비스시장의 잠재시장규모는 130조 원, 추정규모 390~520조 원이며, OECD 국가 27개국 중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 매출규모는 21위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낮음

□ 건축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 마련 시급

- 건축의 주요 구현 주체인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부족
 - 『건축기본법』 마련으로 건축문화의 중요성과 건축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진전이 이루어졌으나, 건축의 주요 구현 주체인 건축서비스산업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 등으로부터 소외되어 국제경쟁력이 낮은 실정
 - 『건축기본법』 제20조에 명시된 재정지원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추진체계 마련을 통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 확보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적 정책 미약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에 지식서비스산업

1)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8~37.

2)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3) 상계서, p.74.

- 으로 포함되나, 중점육성산업인 11대 신성장 동력산업 군에서 제외
- 타 산업 분야의 경우 진흥법(약 36개)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각종 지원이 실시되고 있으나 건축서비스산업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
 - 고부가가치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은 동종산업에 비해 산업의 구조가 취약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부재한 상황
 - 건축서비스산업이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정책·제도 시급

• 빌바오 효과(Bilbao Effect)

-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은 미국건축가 프랭크 게리(Frank Gehry)의 설계로, 굽어지는 형태의 독창적인 외관을 최신의 건축서비스산업 기법으로 구현
-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은 철강 산업의 몰락과 함께 죽어가던 빌바오를 세계 속의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데 공헌
- 구겐하임 미술관은 전 세계에 빌바오를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립 1년 만에 13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등 연간 1억 6천만 달러의 관광수입 발생



[그림 1-1]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대한 요구

- 건축문화의 가치인식 증대 및 역할 증진에 대한 요구
 - 경제성장에 따른 삶의 질 향상과 맞물려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건축문화가 부각되어 국가정체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의 활용이 늘어나며, 실제로 우수한 건축물은 그 자체로 경제 효과를 발생시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건축문화 향상 및 신성장 동력 마련
 -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을 높여 부가가치 확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신성장 동력 마련
 - 동시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수한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국가 문화 창달에 기여

□ 국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건축문화 조성 필요

- 건축서비스 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국가의 브랜드가치 제고
 - 상해(중국), 두바이(UAE), 바르셀로나(스페인), 베를린(독일) 등 세계 유력도시들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문화적·경제적 주도권을 선도함
 - 건축서비스분야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국민 생활공간의 질을 한층 높이고 건축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통한 국격 향상

- 건축서비스산업의 역량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 건축서비스 분야를 국가적 차원에서 독립적 산업으로 적극 진흥시켜 신성장 동력으로써 역할 수행하도록 촉진
 - 좋은 도시, 좋은 건축물을 통한 자산 가치 증진과 경제적 파급효과

등 건축 구현의 결정적인 역할은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으로
국가 문화역량 강화

- 건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 중국 상해는 발전하는 중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신공법과 첨단설계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현대건축의 각축장이자 국가경쟁력을 상징하는 공간
- 상해 푸둥지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진마오빌딩(金茂大厦)을 비롯하여 월드 파이낸스센터, 동방명주탑 등 독창성을 가진 건축물에 의해 도시의 정체성 부각



[그림 1-2] 상해 푸둥지역

2) 연구 목적

□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의 건축서비스산업 법적근거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의 법적 정의 마련
 - 건축물의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이 관련된 행위
 - ‘건축서비스’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 즉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를 의미⁴⁾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여건 분석

- 현실에 근거한 목표설정 및 법률 구상을 위해 관련 분야 현황 파악
 - 일반적으로 법률 제정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가 명확하고, 각종 행정상·재정상 시책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입법정책적인 당위성을 확보하여야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
 -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더불어 산업적 관점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의 규모, 현황 등을 파악하여 입법 수요에 대한 검토

□ 현행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령과의 적합성 검토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현행 법령의 분석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 법적 위상 측면 등을 고려한 관계 설정을 위해 현행 관련 법률 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현행 관련 법령과의 관계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과 관련 내용 및 법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들과의 관계 설정
 - 여건분석의 결과로 법률안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들, 즉 법률안 구성요소, 조치사항들 중 관련 법령과의 합치, 상충 등 연관성 검토

4)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17.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방향 및 구성요소 도출

- 법률안의 성격, 방향 및 체계 설정
 - 현실적 여건과 국가적 비전을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이라는 목표를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성격 및 방향 설정
 - 법률안의 유도방법과 기준설정을 타 분야의 진흥법 입법 사례를 검토하여 진흥법이라는 법적 성격에 부합하는 방식 및 체계 설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구성요소
 -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과 여건분석, 입법수요에 근거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의 개괄적 내용을 도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작성
 - 입법 형식과 법안 작성에 관한 기술적 지침에 근거하여 법률안을 작성하고, 그 세부적 내용 및 구성은 법률 형성에 관한 일반적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법률안 체계, 내용 및 용어 등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총칙,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건축서비스사업의 시행 등 시의성을 가지며 필수적인 내용으로 법률안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의 의의 및 후속과제 제시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
 - 산업·전문 인력 육성 전략 등 정부차원에서의 지속적 정책 및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법령 제정은 관련 정책과 제도 형성의 핵심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적 장치의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육성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적 토대 제공
 - 법령 제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초적이며 시급한 요건 형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

- 또한 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을 진흥시키는 계기가 되며 이를 통한 건축문화 향상 기대

2. 연구의 방법

□ 문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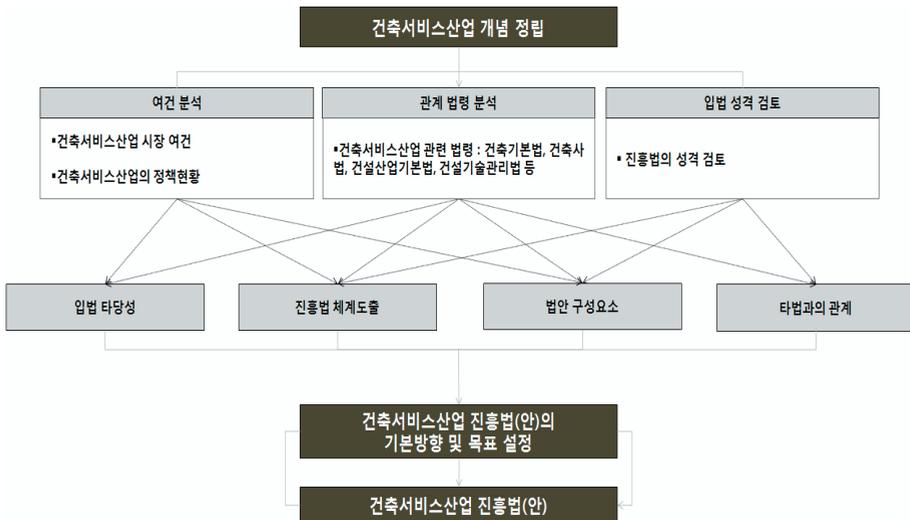
- 관련 선행연구의 조사
- 법적 위상 및 적합성을 위한 요건 분석

□ 현황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령 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여건 분석

□ 자문 · 면담

- 법률안 검토를 위해 공무원, 실무자 등 건축 관련 전문가 서면검토 및 자문
- 법적 적합성 검토를 위해 입법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



[그림 1-3] 연구흐름도

8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방안 연구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2.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 현황
3.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현황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1)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 산업법주에서의 지식서비스산업 정의

- 지식서비스산업의 『산업발전법』 상 정의
 - 지식서비스산업은 지식의 생산, 가공, 활용 및 유통을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산업발전법』 제8조 제2항 기준)

- 클라크(Clark, C. G.)의 산업구조 분류(「경제진보의 제조조건」 (The Conditions of Economic Progress), 1940)
 - 제1차 산업 : 농업, 목축업, 임업, 어업 등 직접 자연에 작용하는 산업
 - 제2차 산업 : 1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 포함
 - 제3차 산업 : 서비스산업이라고도 하며, 유형의 재화를 생산하지 않지만 서비스나 무형의 이익을 공급하여 부를 창출하는 산업

□ 건축서비스의 개념

- 건축서비스 공간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과정의 제반 서비스를 포괄
 - 건축서비스는 『건축기본법』의 개념에 따라 건축물로 구성되는 공간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과정의 제반 서비스를 포괄
 - 건축서비스란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에 이르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 있어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과 관련된 전문 지식 및 기술제공 서비스로 정의되며, 건축서비스산업은 다음의 활동을 말함⁵⁾
 - *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
 -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로서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 * 토지 및 건축물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설계, 감리, 자문, 지도, 유지관리·리모델링·개보수(기획 및 설계에 한함) 등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과 관련된 전문적 서비스
- 건축설계와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련되는 모든 기술분야와의 협업을 전제하기에 건축설계는 구조,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 등 관련 공종과 각종 건축기술 제공 서비스를 포괄하는 ‘건축서비스’의 대표 업역⁶⁾

□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 상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에 포함
 - 2008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21개의 대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업’과는 구분되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에 포함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 과학 및 기술적 업무를 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산업으로,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M72),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으로 구분

5)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16~17.

6) 상계서, p.17.

[표 2-1]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항목표

코드	항목명	코드	항목명
A	농업, 임업 및 어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B	광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C	제조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P	교육 서비스업
F	건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H	운수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T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 활동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U	국제 및 외국기관
K	금융 및 보험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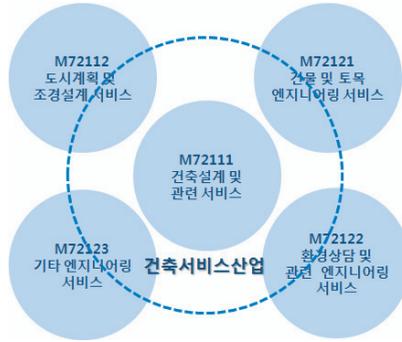
※ 출처 :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4.

[표 2-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관련 산업의 구분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코드
M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M7211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M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M72112
	M721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1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M72123

※ 출처 :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54. 재정리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과의 관계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에는 건축 및 조경 설계 서비스업(M7211),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이 포함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M72111),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M72112),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1),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M72123)과 같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을 ‘건축서비스산업’으로 구분 가능⁷⁾



[그림 2-1] 건축서비스산업의 범위

출처 : 유광흠 외(2011, p16)

□ 미국 산업분류체계 및 연방계약법의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산업은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에 포함⁸⁾
 - NAICS(The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설업’과는 구분되는, “전문적,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에 속해 있음
 -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은 다시 ‘건축서비스(Architectural Services)’, ‘조경서비스(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엔지니어링서비스(Engineering Services)’ 등으로 분류

7) 상계서, p.16.

8) 2007년 개정된 NAICS는 20개의 대분류를 기본으로 전체 산업을 분류

[표 2-3] 미국 NAICS 분류 중 건축서비스산업 위치

Industry Sector	Industry Group	Industry
54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5413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Related Services	541310 Architectural Service
		541320 Landscape Architectural Services
		541330 Engineering Services
		...

※ 출처 : www.naics.com/search.htm,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2. 재인용

- NAICS의 건축서비스산업 정의
 - 건축서비스산업은 설계, 시공절차, 용도지역제, 건축법, 건물재료들에 관한 지식을 적용하여 주거, 공공, 여가, 상업, 공업 등 건물과 구조물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관련된 산업⁹⁾
- 연방계약법의 건축서비스산업 정의(USC Title 40, § 1101)¹⁰⁾
 - 연방계약법에 의해 정의되는 서비스는 첫째, 건축사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의해 실행되거나 승인되는 것이 요구되는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
 - 둘째, 토지에 관련된 연구, 조사, 계획, 개발, 디자인(설계), 시공, 개축, 수선, 수리와 연관되어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
 - 셋째, 건축전문가가 일을 수행할 때 논리적 또는 당연하게 건축적 성격을 갖는 전문적 서비스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예 : 연구, 조사, 맵핑(mapping), 시험, 평가, 컨설팅, 개념설계, 기본설계, 기획, 시방서, 시공단계 서비스, 토지공학,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도면점검 등)

9)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10) 상계서, p.74.

2) 산업적 관점에서의 건축서비스산업 의의

-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
 - 지식서비스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업종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 창출능력이 높음
-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고용창출 효과
 - 건축서비스산업은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제조업에 비해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부문이며, EU는 지식서비스산업¹¹⁾이 유럽의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보고¹²⁾
- 타 분야와 연계효과 및 전 분야의 파급효과 높음
 - 건축서비스산업은 타 산업과 연계효과가 높아 관련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
 - 진미석(2008)¹³⁾은 이를 근거로 지식서비스분야인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산업 전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강조함

11) OECD에서도 NACE(Nomenclature général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dans les Communautés Européennes, 유럽국가내 경제활동분류체계를 일컫음) 지식서비스산업의 분류에 “건축설계·엔지니어링 활동 및 관련기술 컨설팅(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activities and related technical consultancy)” 부분이 포함

12) 진미석(2008), 「산업기술관점에서의 지식서비스 인력 양성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pp.13~14.

13) 상계서, pp.13~14.

□ 마리나베이샌즈 호텔(Marina Bay Sands Hotel)¹⁴⁾

• 개요

- 2010년 6월 준공된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모세 샤프디(Moshe Safdie)가 설계, 한국 쌍용건설이 시공
- 부지 면적 2만 3,400 m^2 , 연면적 30만 2,171 m^2 의 55개 층으로, 지상 약 200m 규모의 스카이 파크와 저층부를 관통하는 아트리움이 3개의 타워로 연결
- 2600객실 규모와 5만 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각종 전시관, 회의실, 2000석 규모의 극장, 아시아 최대 규모의 카지노, 쇼핑센터 등으로 구성

• 특성

- 마리나베이샌즈 호텔은 지역 내를 가로지르는 두 개의 주요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방향성을 제시하며 도시민 삶을 위해 보행자 거리에 주요점을 두고 계획
- 싱가포르의 관문을 상징하도록 '사'형의 기울어진 경사 구조로 건물을 짓기 위해 포스트 텐션(Post Tension) 공법, 트랜스퍼 트러스(Transfer Truss) 공법을 적용
- 현존하는 최고 난이도 건축물로서 싱가포르의 랜드마크적 특성 극대화



[그림 2-2] 마리나베이샌즈 호텔

2. 건축서비스산업의 국내시장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 시장규모

- 매출액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규모는 2005년 4.16조 원, 2007년 5.43조 원, 2008년 4.34조 원, 2009년 3.78조 원으로, 약 4조 원 규모

[표 2-4] 국내 설계시장 추정치

년도	건축허가 면적 (단위: 1,000㎡)	추정 국내설계시장					
		건축사 신고금액 적용		통계청 자료금액 적용		대가기준 적용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단가(원)	금액
2005	111,506	23,000 (추정)	2조 5646억	36,000	4조 164억	52,000	5조 7983억
2007	150,957	23,164	3조 4968억	36,000	5조 4345억	52,000	7조 8500억
2008	120,658	24,905	3조 50억	36,000	4조 3437억	52,000	6조 2742억
2009	105,137	26,964	2조 8349억	36,000	3조 7849억	52,000	5조 6712억

※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자료,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4. 재인용

- 매출증가추이

-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규모는 2005년 9.3조 원으로 2001년 대비 59% 증가하였으며, 그 중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은 2005년 4조 원으로 2001년 대비 48% 증가함
- 동일한 시기의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을 비교해보면 앞에서 언급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정책의 영향을 추정 가능¹⁵⁾

14) Arcspace, 「Online Architecture」, <http://www.arcspace.com>.

15)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4.

[표 2-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규모 및 증감율

구 분		매출규모 및 증감률(백만원, %)		
		2001년	2005년	증감율
건축 및 조경설계서비스업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603,056	3,781,823	45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105,034	234,584	123
	계	2,708,090	4,016,407	48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37,508	3,188,747	84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93,158	222,678	13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294,416	1,870,316	44
	계	3,125,082	5,281,741	6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5,833,172	9,298,148	59

※ 출처 : 통계청(2005), 「서비스업 종조사 보고서」,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4. 재인용

2) 시장구조의 불균형 심화

□ 업체규모별 불균형

- 대형업체에 매출 편중
 - 종사자 규모가 1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전체 사업체의 1.3%이고, 100인 이상 대형업체의 매출 비율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38.0%,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30.5%
 - 즉 전체 사업체 수의 1.3%에 불과한 100인 이상 대형사무소가 전체 약 4조 원 가운데 30.5%에 해당하는 1.2조 원의 매출을 차지, 대형사무소로의 매출 편중¹⁶⁾

[표 2-6] 종사자 규모에 따른 매출액 현황(2005년)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백만원)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및 조경설계)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및 조경설계)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소계	9,298,148	4,016,407	5,281,741
1명	65,180	45,424	19,756
2-4명	662,885	482,120	180,765

16)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8.

종사자 규모별 매출액 (백만원)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건축서비스산업 (건축 및 조경설계)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건축 및 조경설계	엔지니어링서비스산업	
5-9명	1,028,110	593,167	434,943	
10-19명	1,216,409	605,107	611,302	
20-49명	1,652,764	622,597	1,030,167	
50-99명	1,067,352	443,095	624,257	
100-199명	1,117,904	470,084	647,820	
200-299명	745,329	332,506	412,823	
300이상	1,742,215	422,307	1,319,908	

※ 출처 : 통계청(2005),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총괄」,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69. 재인용

□ 지역별 불균형

- 서울 및 경기지역 편중
 - 전국 사업체 7,463개 중 49.1%인 3,664개가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하고, 지역별 매출액은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매출액의 73.2%,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매출액의 76.5%가 서울과 경기지역에 집중¹⁷⁾
- 지역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문제
 - 수도권 산업 집중화는 산업클러스터의 시너지 효과보다 경쟁에 의한 출혈이 우려되고, 지방의 경우 전문인력의 부재로 지역 업체의 낙후 가중¹⁸⁾

[표 2-7] 2005년 지역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구 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총 사업체 수 (개)	총 매출액 (백만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사업체수	매출액		
서울특별시	2,525	2,621,985	1,259	2,889,418	3,784	5,511,403
부산광역시	558	181,051	237	291,318	795	472,369
대구광역시	497	151,490	117	63,273	614	214,763
인천광역시	237	72,687	97	46,508	334	119,195

17) 유광흥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6.

구 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총 사업체 수 (개)	총 매출액 (백만원)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산업			
	사업체수	매출액	사업체수	매출액		
광주광역시	263	63,450	123	108,448	386	171,898
대전광역시	244	104,705	72	61,152	316	165,857
울산광역시	164	45,356	98	47,009	262	92,365
경 기 도	1,139	316,888	763	1,153,037	1,902	1,469,925
강 원 도	217	38,734	81	77,439	298	116,173
충청북도	208	75,121	70	73,946	278	149,067
충청남도	227	57,327	90	53,676	317	111,003
전라북도	210	33,438	64	32,161	274	65,599
전라남도	148	64,825	88	149,219	236	214,044
경상북도	327	52,435	122	64,866	449	117,301
경상남도	400	121,653	221	154,956	621	276,609
제 주 도	99	15,262	22	15,315	121	30,577
합 계	7,463	4,016,407	3,524	5,281,741	10,987	9,298,148

※ 출처 : 통계청(2005), 「서비스업 총조사보고서」, 재정리,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87~89, 재정리

□ 생산력 및 고용여건 취약

- 경기침체에 따라 사업체당 영업 이익률은 건축설계 산업이 12.4% 감소,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12.0% 감소하였으나, 매출액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이 증가함

[표 2-8] 영업수지 현황

단위 : 억 원, %, %p

산 업 분 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 이익률		
	2001	2005	증감률	2001	2005	증감률	2001	2005	차이
건축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7,081	40,164	48.3	19,708	34,215	73.6	27.2	14.8	-12.4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31,251	52,817	69.0	24,898	48,398	94.4	20.3	8.4	-12.0

※ 출처 : 통계청(2005),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총괄」,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5. 재인용

- 사업체당 매출액은 엔지니어링 산업이 건축설계 산업에 비해 2.8배 높고, 1인당 매출액에 있어서도 엔지니어링 산업은 8,100만원,

18) 상계서, p.36.

건축서비스산업은 7,500만원임. 특히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업이 7,400만 원으로 가장 낮음¹⁹⁾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의 임금을 비교해볼 때 평균 임금의 경우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이 2천8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이 2천2백만 원으로 가장 낮음²⁰⁾

[표 2-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의 인건비, 평균 임금

구 분	평균 임금 (백만원)	일인당 매출액 (백만원)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서비스업	25	78
건축서비스산업(건축 및 조경설계)	23	75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22	74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28	89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81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78
환경상담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5	91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26	76

※ 출처 : 통계청(2005), 「산업 세세분류 및 종사자 규모별 총괄」,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재정리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시장 현황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 시장은 대형사무소와 소규모 사업체로 양극화된 상태로 시장의 수익 분배가 대형사무소에 편중되었으며, 지역적 불균형도 높은 상황임. 또한 유사분야에 비해 저하된 생산력을 보이며, 효율성이 낮은 인력구조와 동시에 열악한 고용환경이 형성됨

3) 국제경쟁력 취약

□ OECD 27개 국가 중 건축설계 업체당 매출규모 2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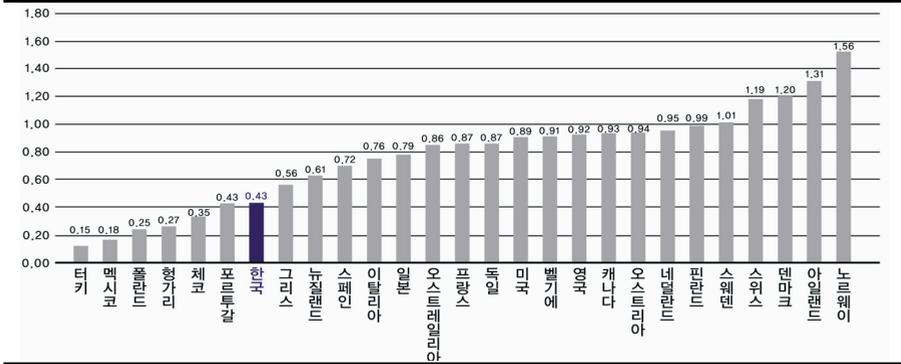
- OECD 국가 업체당 평균 매출 0.77\$/업체, 한국 0.43\$/업체
 - OECD 27개 국가 중 국내 건축설계업체당 매출규모는 21위이고,

19)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74.

20) 상계서, p.74.

OECD 국가의 업체당 평균 매출이 0.77\$M인데 반해 국내 건축설계업체는 0.43\$M/업체로 업체당 낮은 매출 규모를 보임²¹⁾

(단위 : (\$M)/Establishments , 기준년도 : 2007)



※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7개 회원국 기준

[그림 2-3] OECD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비교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출처 : 김진욱 외(2009, p52)

□ G7 국가의 건축설계업체 평균매출의 절반 수준

- G7 매출 평균 0.81\$M/업체의 약 53%
 -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평균매출액을 G7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G7의 평균매출액은 업체당 0.81\$M인데 반해 국내 건축설계업체 평균매출은 0.43\$M/업체로 G7 국가의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약 53%²²⁾

(단위 : (\$M)/Establishments , 기준년도 : 2007)



[그림 2-4] G7 국가의 건축설계 산업 : 업체 1개당 매출실적

출처 : 김진욱 외(2009, p53)

21) 상계서, p.52.

22) 상계서, p.53.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경쟁력

- 설계단계별 분업화에 의해 개별 건축서비스전문인의 경쟁력 저하 초래²³⁾
 - 발주방식이 건축설계 관련자의 조직구성 및 자체 역량, 설계자의 육성까지도 좌우하고 국제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침
 - 국내 발주시스템 특성상 단기간의 기획설계 공모 형태로 운영되어, 이에 적합하도록 설계단계에 따라 분업화가 이루어져 설계전반에 대한 전문 역량의 축적이 곤란

※ 미국 설계사 조직 특성

- 한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담당자가 연속적으로 업무 담당
- 프로젝트의 업무 분담은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와 프로젝트 디자이너(Project Designer)의 역할이 동등한 지위로 이분화되어 역할 정립
- Marketing Director는 수주 정보 확보만을 위한 독립적인 조직으로 존재하여 건축주 확보에 주력하며 하위조직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등이 있어 RFP Contents 작성과 같은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등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짐

□ 건축서비스 기업의 경쟁력

- 건축설계업체 규모는 세계 수준
 - 2009년 건축설계업체 매출 1위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총매출액 2,610억 원, 직원 수 1,000여명으로, 매출규모면에서는 미국 건축설계업체 7~8위에 해당하고, 그 뒤로 매출 2위 업체인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총매출 1,580억 원, 직원 수 1,100여명으로 미국의 9~10위권에 해당²⁴⁾
-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해외진출 저조 및 지역 편중
 - 국내 건축설계업체 중 해외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전체의 3.9%이며, 미국 상위 20개 설계업체의 해외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7%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업체 해외매출은 아직 매우 미미한 수준²⁵⁾

23)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41~43.

24) 상계서, p.39.

25) 상계서, p.40.

- 국내 건축설계업체의 진출지역은 아시아(중동지역 제외) 65.0%, 중동 20.0%로 편중된 상태임. 또한 해외지사 보유업체는 2.2%²⁶⁾

[표 2-10] 미국과 한국의 업체별 비교

	업체명	2009매출규모 (건축서비스)	업체규모 (직원수)	비고
미국	AECOM	5.5조(7,700억)	51,000명	100개국 이상에 대형 프로젝트 실시 건축서비스+엔지니어링
	Gensler	6,000억	2,000명	전세계 35지사 건축서비스 전문
	SOM	3,100억(1,300억)	800명	해외매출 약 1,300억
	KPF	1,300억(930억)	550명	
한국	삼우	2,610억	1,000명	
	희림	1,580억	1,100명	

※ 출처 : ENR, Architectural Records(2010),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39. 재인용

- 가격경쟁력 취약
 - 건축설계업체의 구조를 보면 인건비와 외주 용역 비중이 높아 단가 경쟁에서 불리하고, 프로젝트 완성도 측면에서 글로벌 업체에 비해 완성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임

26)상계서, p.37.

□ 링크트 하이브리드(Linked Hybrid)²⁷⁾

- 개요

- 미국 건축가 스티븐 홀(Steven Hall)의 작품으로 220,000m²의 부지에 690개의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가진 북경 내 최대 규모의 지열 주거단지
- 건물의 20층에 위치하는 루프(the sky-loop)는 8개의 타워를 연결하는데 이는 카페와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자 타워들의 집합적 공간

- 특성

- 중국의 고유한 집합주거는 모듈에 의한 반복이 특징으로 링크트 하이브리드에서는 전통 중국 집합주거를 모티브로 사용하되 보다 다양한 주거의 집합이 형성되도록 설계
- 100m 바닥까지 연결된 지열용 통은 덥혀지거나 식힌 물을 건물 콘크리트 바닥으로 전달하여 냉방 및 난방으로 사용하는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 단지의 모든 면이 대중에게 열려있는 21세기형 다공성 도시공간을 창조하여, '도시 안에 열린 도시'를 만들



[그림 2-5] 링크트 하이브리드

27) Arcspace, 「Online Architecture」, <http://www.arcspace.com>.

3.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시장 현황

1) 세계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 발주방식의 변화

- One Stop Shop(OSS) 제공에 대한 요구
 -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 혹은 EPC)으로 발주하는 사업 증가
 - 발주자에게 사업자금을 주선하는 계약자 금융주선 방식 또는 발주자는 부지만을 제공하고 공급자가 필요한 시설물을 건설하는 민간투자 사업방식 증가
- 프로세스관리(사업관리) 전문기술 중시
 - 최근 해외시장에서 발주자의 'One Stop Shop' 개념 선호에 의한 발주방식 변화에 따라 프로세스관리(사업관리) 능력 필수
-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전문기술 활용 능력의 중요성 부각
 - 과거 해외건설시장에서의 일반적이었던 대외경제협력자금은 국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한계 노출
 -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은 기존의 생산기술력에서 국제금융에 대한 전문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변화
- 가격경쟁 심화
 - 입찰과정에서의 형평성 및 공정성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과 재정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압력 증가로 가격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 국가차원의 정치적·외교적 지원 중요성 증가

- 국가 차원의 네트워크, 문화, 언어 등 글로벌 기반 지식 확보 요구
 - 해외수주에 있어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국가 간 유대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및 외교적 영향력 형성
 - 해외 건설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문화, 언어능

력 등 글로벌 기반 지식 배양 및 활용 필요하고, 기업의 인지도와 함께 발주기관과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여부도 중요한 실정

- 해외시장 진출 지원 정책 및 금융지원 제도
 - 국가의 정책지원과 금융지원은 당해 국가의 해외시장 경쟁력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
-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구사 필요
 - 상품별 시장, 지역별 시장, 시장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사하여 다변화는 상황에 대응 필요

□ 미래시장의 방향 및 세계시장의 변동

- 지속가능성과 녹색 건설 요구 증가
 -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매년 60% 이상 성장(원전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 혹은 기술 등에 대한 벤처 캐피탈 투자도 증가 추세
 - 녹색빌딩이 미국, 유럽 중심에서 전 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녹색 설계 및 건설시장이 급성장(빌딩시장 중심)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으로 시장중심 이동
 - 세계 상위 200개 건축서비스, 엔지니어링 업체의 2009년 매출 분석 결과(\$52,45B)를 보면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중·남부 국가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예산 한계로 성장 주춤

2)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 건축서비스 기업 현황

- 사업체 및 종사자 수 감소
 - 2010년 기준 미국의 건축서비스산업 사업체 수는 약 69,164개, 종사자 수는 약 238,614명으로 2006년 이후 지속적 감소 추세
- 매출액 하락세 지속
 - 2009년 최고의 하락률을 보였으며 2010년까지 하락세 지속

[표 2-11] 미국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구분	연 도					연도별 변화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사업체 (개)	73,692	74,044	74,035	70,003	69,164	0.5	0.0	-5.4	-1.2
매출액 (백만\$)	40,822	44,951	45,420	41,178	39,522	10.1	1.0	-9.3	-4.0
종사자 (인)	250,014	255,920	259,683	242,910	238,614	2.4	1.5	-6.5	-1.8

※ 출처 : Kevin Culbert(2010.4), 「BIS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p.31. 재정리,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9. 재인용

- 건축서비스산업의 구성
 - 개인소유자 등 소규모 사무소의 3분의 2이상이 5인 미만이며, 이들은 연간 총매출의 6.5% 점유²⁸⁾
-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 구성
 - 건축서비스산업의 매출은 신축 3분의 2, 현존하는 건축물의 재정비 및 개보수 업무 3분의 1로 구성되고, 매출의 약 50%는 의료시설,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통시설 등의 공공 건설부분에서 창출²⁹⁾

□ 건축서비스 시장 현황

- 비주거부분의 수익 비중 큼
 - 기관, 상업 및 산업, 주거, 기타 등 4부분으로 구분할 때, 주로 비주거 부분을 통해 수익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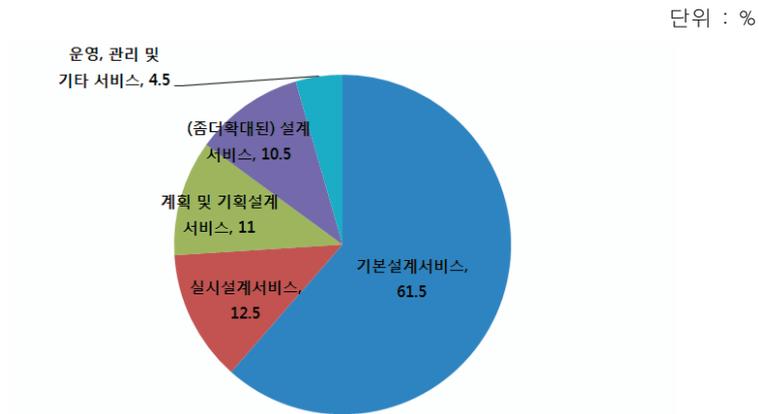
28)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89.

29) 상계서, p.90.

- 공공부문 발주가 가장 큰 비중 차지
 - 발주주체에 따른 발주 비율을 보면 주정부 약 26%, 기업 등 민간부문이 24%, 비영리기관들이 16%, 건설회사 및 부동산 개발업자 14%, 민간인 11%, 연방정부 5%, 기타 엔지니어 및 설계 전문가들 3%³⁰⁾

□ 건축서비스산업 생산 현황

- 주 매출원은 전문서비스 수수료
 - 공공·기관·상업 부문 건축물 관련 사전기획, 컨설팅, 설계활동 등 전문적 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수료가 매출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큼
-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설계
 - AIA 조사에 따르면, 61.5% 이상이 기본설계, 12.5%는 실시설계, 11%는 기획 및 사전설계(planning & pre-design), 10.5%는 확장된 기본설계, 4.5%는 운영 및 유지보수, 기타 서비스에서 매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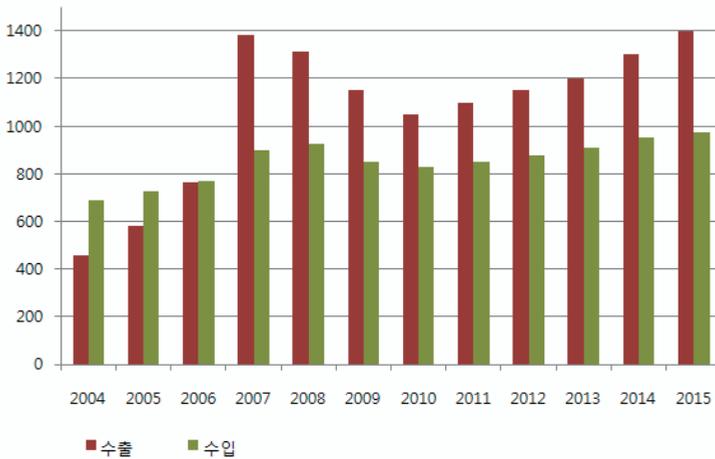


[그림 2-6] 매출 총액에 대한 서비스 분류(2010년)
출처 : 김진욱 외(2010, p93)

30)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92.

□ 해외경쟁력 현황

- 국경에 상관없는 자유로운 건축서비스 활동의 가능
 -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로 미국과 캐나다 건축가들은 양국에서 자유로운 건축서비스 활동이 가능하며, 현재는 멕시코로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
- 유럽 건축회사의 미국시장 진입 증가
 - Aedas Architects Group, Forster & Partners Limited 등 유럽의 대형 건축회사들은 미국 내 지사, 미국 현지 전문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맺고 미국 내 주요 프로젝트 시장에 진입
- 미국 건축서비스회사의 해외 진출 지속적 증가 추세
 - 미국의 연간 서비스산업통계에 따르면 미국 건축서비스회사들의 해외시장 진출규모는 2005년에 5억 2천 7백만 달러, 건축서비스 산업 수익의 1.4%에서 급등하여 2008년에는 17억 8천 5백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



[그림 2-7] 미국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진입 현황 및 전망(2010년)

출처: 김진욱 외(2010, p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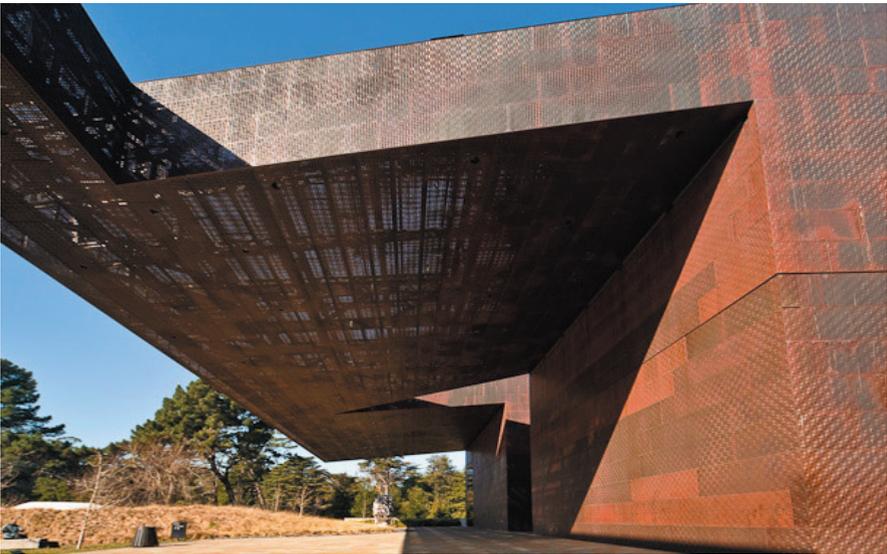
□ 드영 기념박물관(M. H. de Young Memorial Museum)³¹⁾

• 개요

- 1895년 3월 24일에 개관한 샌프란시스코의 드영 기념박물관은 1989년 지진으로 파손된 후 2005년 재개관
- 새로 개관한 드영 기념박물관은 유럽의 대표적 건축가인 헤르조그 앤 무런(Herzog & Meuron)의 북미 최초 박물관 설계작

• 특성

- 구리, 돌, 나무, 유리 등 따뜻한 느낌의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주변과 융화되는 건축물을 형성하도록 함
- 기존 박물관의 조형이나 조경을 최대한 살리고 동일한 대지를 대상으로 건축면적을 37% 줄여 2 acre에 달하는 오픈 스페이스 제공
- 드라마틱한 구리 파사드는 주변 환경에 대한 조화를 위한 표현이자 건축 재료에 대한 실험정신과 이를 구현해내는 현대 건축설계 및 공법의 결과물
- 미서부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건축물이며, 동시에 골든게이트 파크와 금문교와 함께 도시의 랜드마크로 연평균 120만 명이상 방문



[그림 2-8] 드영 기념박물관

31) Arcspace, 「Online Architecture」, <http://www.arcspace.com>.

3)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현황

□ 건축서비스 기업 현황

- 건축서비스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 규모 현황
 - 2009년을 기준으로 일본의 토목건축서비스업 사업체 중, 건축설계업의 사업체 수는 49,544개, 종사자 수는 331,474명으로 2004년을 기점으로 소폭 증가 추세³²⁾

[표 2-12] 일본 건축서비스산업 동향

구분		연도					
		1996년	1999년	2001년	2004년	2006년	2009년
사업체 수	토목건축서비스업	61,398	59,230 (-3.5)	60,230 (1.7)	53,122 (-11.8)	56,489 (6.3)	62,997 (11.5)
	건축설계업	-	-	-	40,535	43,864	49,544
	측량업	-	-	-	10,487	10,381	9,988
	기타 관련업	-	-	-	2,100	2,244	3,465
종사자 수	토목건축서비스업	459,235	429,317 (-6.5)	417,914 (-2.7)	346,900 (-17)	423,405 (22.1)	428,043 (1.1)
	건축설계업	-	-	-	243,495	324,546	331,474
	측량업	-	-	-	84,498	80,097	69,874
	기타 관련업	-	-	-	18,907	18,762	26,695
매출액(백만엔)		-	-	-	-	-	9,737,028

* 출처 : 일본 중무성 경제센서스 자료 재정리,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95. 재인용/ * ()안은 연도별 변화율

- 건축서비스산업 업체규모별 분포
 - 업체의 70%가 5인 미만 소규모로, 평균 종사자수는 6.7명, 연간 전체 매출의 약 14.1% 차지
 - 업체규모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5인 미만 소규모사무소가 0.3%, 100명 이상의 사무소는 74.1%의 점유율을 차지, 한국과 유사한 업체 규모별 불균형 현상을 보임³³⁾

32)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95.

33) 상계서, p.96.

[표 2-13] 직원수에 따른 단독기업체 설립현황

직원수(명)	사업체수	점유율(%)	경비총액에 차지하는 급여지급총액의 평균치(%)
1~4	29,280	71.3	33.2%
5~9	6,243	15.2	51.9%
10~39	4,218	10.3	48.6%
30명 이상	1,293	3.2	46.6%
총계	41,056	100	38.0%

※ 출처 : 일본 총무성 경제센서스 자료 재정리,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95. 재인용

[표 2-14] 직원수에 따른 단독기업체 수입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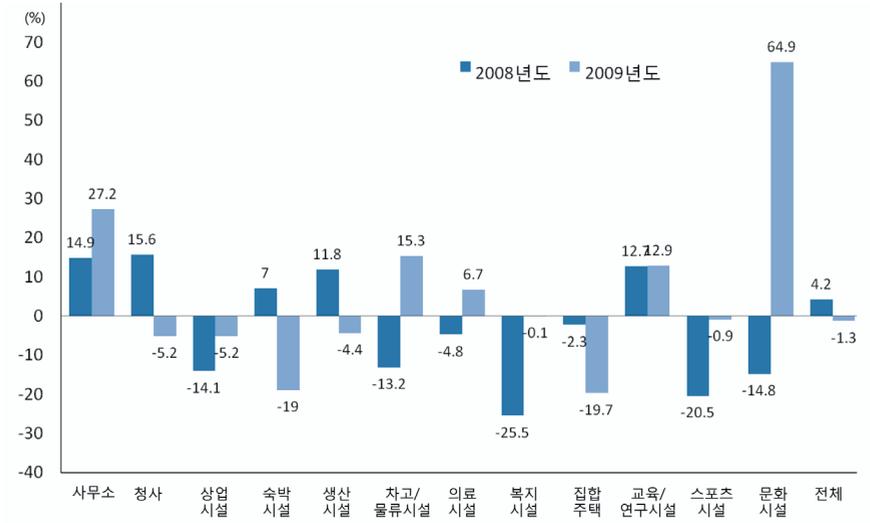
직원수(명)	수입액(백만엔)	점유율(%)	사무소 1개소당 평균수입액(만엔)	점유율(%)
1~4	478,719	14.1	1,643	0.3
5~9	422,086	12.4	6,865	1.3
10~19	424,133	12.5	16,590	3.1
20~29	531,981	15.7	36,480	6.9
30~99	775,930	22.8	75,423	14.
100 이상	765,809	22.5	390,533	74.1
총액	3,398,831	100	527,543	100

※ 출처 : 일본 총무성 경제센서스 자료 재정리,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96. 재인용

□ 건축서비스 시장 현황

- 매출액을 통한 발주경향(니케이 아키텍처(Nikkei architecture) 자료 기준)
 - 설계·감리 매출은 2008년도와 대비하여 2009년에 약 1.3% 감소하였으나, 문화·교육기관 관련시설 발주증가로 전체 매출은 감소했지만 공공부문 매출 증가³⁴⁾

34) 상계서, p.98.



[그림 2-9] 설계사무소의 매출 추이

출처 : 유광흠 외(2011,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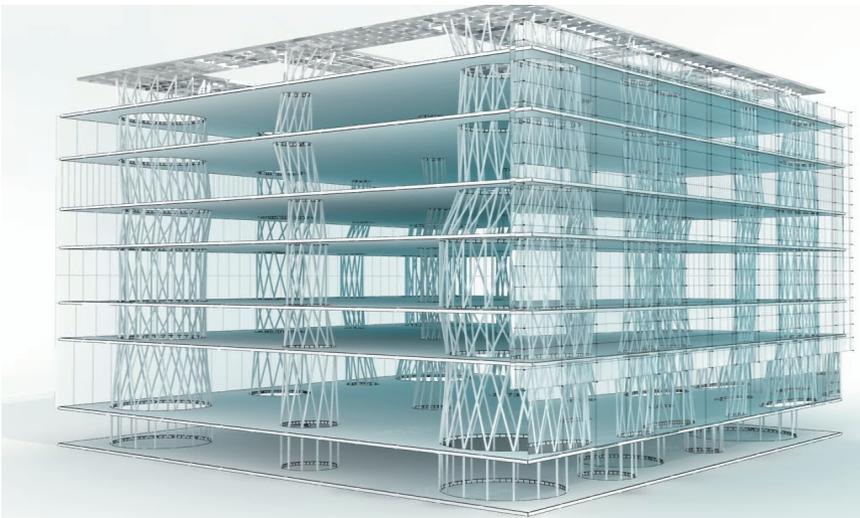
□ 미디어테크(Sendai Mediatheque)³⁵⁾

- 개요

- 일본 건축가 토요 이토(Toyo Ito)의 작품으로 일본 센다이시에 위치하며, 도서,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문화시설로 약4천 m^2 의 부지에 지하2층, 지상7층의 공간

- 특성

-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도시 공간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평가되는 건축물로 다층공간을 가진 건축물은 특별한 공간성을 보이며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함으로써 자발적 공간성알 형성하는 특성에 기인함
- 평면(Plates), 튜브(Tubes), 표면(Skin)으로 평면은 7개 층을 모두 다르게 설계함으로써 매체와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함. 또한 13개의 튜브가 지하부터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어 수직 동선을 만들고, 표면은 2중 유리외 상부의 개폐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조 비용을 최소화함



[그림 2-10] 미디어테크

35) Galinsky, 「Galinsky」, <http://www.galinsky.com>.

4.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1)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법률 현황

① 건축기본법

□ 건축기본법의 개요

- 건축정책의 추진 근거
 - 『건축기본법』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종래의 건축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한 계기가 된 법률로, 건축의 공공성을 천명하고 건축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됨
- 건축의 공공성³⁶⁾ 천명
 - 『건축기본법』은 이념법 및 실천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건축이 일상적 생활공간이자 사회적 자산이며 문화적 유산으로서 공공적 가치를 가진다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함
- 기본구성
 - 『건축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으로 구성됨

□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관계

- 기본법으로서의 역할
 - 『건축기본법』은 건축분야에 대한 기본원리를 제시하여 건축에 관한 제도 전반의 이념적 토대 및 관련되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성립된 건축분야의 기본법으로 이해되어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 정의 부재
 - 제3조 제4항에서 ‘건축디자인’에 대하여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

36) 김광현 외(2006, p.19.)는 건축의 공공성을 사회공동체 모두의 참여와 노력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정의함

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서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정의

- 즉 『건축기본법』에서는 직접적으로 건축서비스에 대한 정의나 산업적 개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며, 다만 건축서비스산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디자인이 어떠한 활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범주에 대해 다름
- 산업적 측면이 아닌 건축문화 관점 강조
 -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에서는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진흥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최소한의 사항에 국한되어 있으며 산업적 측면이 아닌 건축문화 자체에 대해 규정함
 - 『건축기본법』은 건축에 대한 국가·국민 등의 책무,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기본법』에 산업진흥을 위한 구체적 방안 규정할 경우 『건축기본법』의 목적·성격이 모호해질 것으로 예상됨

[표 2-15] 『건축기본법』의 용어정의(제3조)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3.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6.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7.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요

- 건설공사에 관한 법률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 기본구성
 - 『건설산업기본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업의 등록, 제3장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제4장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자 지원, 제6장 건설업자의 단체,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제8장 건설분쟁 조정위원회, 제9장 시정명령 등,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등으로 구성

□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관계

- 건설공사와 연계된 개념 정의
 - 제2조 제1항에서 ‘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명시하고, 제3항에서 ‘건설용역업’을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으로 정의
 - 제2조 제4항은 ‘건설공사’를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
-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사업 위주
 -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자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법률적 성격은 건설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 공사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 건설업법으로 이해가능
 - 건축공사도 건설공사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공사를 수행

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부재

[표 2-16] 『건설산업기본법』의 용어정의(제2조)

제2조(정의)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4.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이하 생략]

③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관리법의 개요

- 건설기술의 이용과 관리 위한 법률
 -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 기본구성
 - 『건설기술관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설기술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3장 건설기술용역 및 건설공사의 관리 등, 제4장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등, 제5장 건설감리협회, 제6장 건설기술인 협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관계

- 건설기술의 정의 속 건축설계 제외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2호 가목 '건설기술'의 정의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

토를 명시하나,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고 명시

- 제2조 제4호 ‘설계 등 용역’은 건설기술용역 중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제2조 제2호를 기준으로 볼 때 건축물 조성에 대하여 생애과정 전반에 관한 서비스 업무는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물 설계는 제외

[표 2-17] 『건설기술관리법』의 용어정의(제2조)

<p>제2조(정의)</p> <p>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설계감리(設計監理)·시공·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목 이하 생략]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직무(役務)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설계 등 용역”이란 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설계감리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검사·관리 및 운용 다.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제5호~제7호 생략) 8. “건설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라 한다) 중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 『건설기술관리법』 상 건축서비스개념 성립 근거 부재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제2조(정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설계를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건축서비스의 개념이 동 법률 내에서 성립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됨
 - 『건설기술관리법』은 건설기술의 수준향상과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건축서비스산업의 향상을 통한 건축문화적 경쟁력 제고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과의 관계성 낮음

④ 건축사법

□ 건축사법의 개요

- 건축사의 자격과 업무에 관한 법률
 - 『건축사법』은 건축사의 자격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건축사의 자격에 관한 사항, 건축사 자격 시험 관련 및 등록, 주요 업무와 관련된 사항, 건축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사항, 건축사협회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
- 기본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 제3장 건축사 자격시험 등, 제3장의2 자격등록 등, 제4장 업무, 제5장 건축사사무소 등, 제5장의2 징계, 제6장 건축사협회, 제6장의2 보칙, 제7장 벌칙 등으로 구성

□ 건축사법과 건축서비스산업의 관계

- 건축사의 산업적 업무영역과 건축서비스산업의 불일치
 - 『건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건축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업무와 제19조에서 지정하는 기타 업무를 행하는 자”로 규정
 - 즉 『건축사법』 중 건축사가 담당하는 산업적 영역과 건축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적 범위가 동일하지 않으며,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음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제도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 건축서비스산업은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에서 제외
 -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을 신성장 동력 지식집약형 산업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2011년 ‘엔지니어링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 엔지니어링산업을 육성·발전하기 위한 인력·기술·금융 등에 2010년

에서 2015년까지 5년간 1조 8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동종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은 이에 포함되지 않음

- 건축서비스산업 계약 관련 제도
 - 건축설계는 지식서비스산업임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방식’과 ‘회계예규’의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에 해당하여 일관성 없이 부분적으로 포함
 - 건설공사시 설계기준의 계약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계비를 별도로 산정받기 어려운 점 등 계약구조상의 문제를 내포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의 시급

- 신성장 동력의 가능성을 가진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서비스산업의 하나로 21세기 신성장 동력으로 높은 가능성을 가지기에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국가위상에 맞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위상 확립 및 건설업과 동반 성장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낙후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시급한 과제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
- 건축서비스산업을 위한 별도의 계약방식 마련 필요
 - 건축설계의 경쟁력과 건축물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 별도의 계약방식 마련도 필요한 실정

□ 신현대미술관(New Museum of Contemporary Art)³⁷⁾

• 개요

- 뉴욕 신현대미술관은 뉴욕 Bowery 235번지에 연면적 5,580 m^2 및 8층 규모로, 로비, 카페, 서점, 전시장, 미술관 교육센터, 관리행정 사무실, 테라스로 둘러싸여진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됨
- 일본의 대표적 여성 건축가인 가즈오 세지마(Kazuyo Sejima)와 류에 니시자와(Ryue Nishizawa)의 작품으로 이들은 2010년 프리커처상을 수상

• 특성

- 용도지역제 원칙으로 인한 규제를 그들만의 건축적 전략으로 풀어낸 작업으로, 박스를 쌓아올린 형태의 구성과 건물 코어로부터 상이한 방향으로 비틀어진 축들은 시설에 역동성을 부여하며, 천창을 통해 자연광을 실내로 끌어들임. 또한 형성된 창들로 도시의 다양한 광경을 제공
- 건물은 은색 알루미늄 메쉬(mesh)로 마감되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예술의 역동성과 신현대미술관의 개방성과 투과성을 보여줌



[그림 2-11] 신현대미술관

37) Arcspace, 「Online Architecture」, <http://www.arcspace.com>.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방향

1. 진흥법 성립 요건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체계 도출
3. 건축문화 향상 기본내용 도출

1. 진흥법 성립 요건

1) 일반적인 법률의 목적

□ 합목적성

- 법을 정립할 때 법의 합목적성(合目的性), 즉 내용이 그 법에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정해야 함. 물론 법의 정립은 목적에 부합될 것이 요구되지만, 지나치게 목적만 추구하다 보면 정의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거나 위반하는 법을 만들게 될 것임³⁸⁾
- 현대복지국가에 이르러서 일반적인 법은 개인의 이익과 사회(국가)의 공공복리를 동시에 증진시키는 것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음

□ 법적 안정성

- 법은 국민이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활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정립해야 함. 그러므로 법적 안정성³⁹⁾은 결국 현실을 중시

38) 김범주(2010), 「쉬운 법 편안한 생활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pp.29~30.

39) 박상기 외(2010, pp.9~11.)에 따르면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역

할 수밖에 없는데 현실을 지나치게 추종하다보면, 정의나 합목적성을 갖지 못한 법을 정립하게 될 개연성 높음

-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법의 변경을 어렵게 해야 하며, 법의 내용이 실현가능한 것으로서 국민의 의식 구조에 부합해야 함⁴⁰⁾

□ 법이념 간의 상호관계

- 『헌법』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음
- 즉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이 충돌할 때, 이의 조화로운 조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인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하고 있음⁴¹⁾

2) 진흥법의 법적 성격

- 진흥법으로서의 입법유형
 - ‘진흥법’이라는 입법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성법, 지원법, 촉진법, 발전법이라는 입법유형과 차이가 없고, 또한 기본법이라는 입법유형과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함
 - 진흥법, 조성법, 육성법, 촉진법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결정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법률의 위치, 그 규정의 구성, 내용, 형식 등을 고려하여 입안자 또는 입법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⁴²⁾
- 진흥법 관련 제명

할을 하는 동시에 불법적인 체제의 유지에도 기여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중적인 법이념

40) 김범주(2010), 「쉬운 법 편안한 생활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pp.29~30.

41) 상계서, pp.29~30.

42) 박영도(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 2인과 실시한 연구 워크숍 내용을 정리함

- 현행 법제상 그 제명에 기본법이 사용되는 법령과 진흥법·조성법·육성법·촉진법 등을 사용하고 있는 법령을 비교할 때 모두 국가의 주요정책과제로 되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일정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 구성과 내용적인 면에서도 유사함

[표 3-1] 진흥법 및 유사한 법률 입법 사례

제 명	법률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기상산업진흥법 김치산업진흥법(2012.1.22 시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12.1.26 시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외식산업진흥법(2011.9.11 시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발전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원양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산업발전법 전시산업발전법
육성, 지원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촉진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명	법률명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산업법	석탄산업법 인삼산업법 종자산업법
기 타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기본체계 도출

1) 진흥법 입법례의 기본체계 검토

□ 법률상의 진흥의 의미

- 조성·개발·육성을 포괄하는 진흥의 의미
 -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조성’이라 함은 어떠한 활동을 지원,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여건·정보·인력 등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정비·보강함으로써 당해 활동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며, ‘진흥’은 조성·개발·육성·지원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널리 사용
 - 『관광진흥법』 제1조에서 “이 법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진흥의 의미는 조성·개발·육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조에서도 “이 법은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킴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 진흥의 의미를 운영·지원·육성·발전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

□ 특정 산업의 진흥법 입법례

- 산업진흥을 위한 입법례
 -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진흥 여건을 조성하여 대상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진흥법을 살펴보면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진흥책을 명시하는 법문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산업 진흥법이라는 일개를 갖추는 기본체계는 유사한 형태로 통용됨

[표 3-2] 산업관련 진흥법의 주요내용

법률명	주요내용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국가 등의 책무 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고용 촉진 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협회 및 공제조합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문화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창업, 제작, 유통 지원(투자회사, 투자조합) 전문인력 양성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협동연구 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문화산업시설의 지정 문화산업단지 조성 문화산업진흥지구지정 통계조사, 소비자보호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

- 각 산업진흥법 공통체계
 - 입법사례를 기초로 특정 산업관련 진흥법제에 포함되고 있는 공통적인 입법내용을 정리하면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시스템 부문, 산업 인프라의 기반조성 부문,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부문으로 나눌 수 있음

- 산업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산업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
- 산업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진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명시하고, 산업의 정보화와 표준화를 위한 내용, 산업활성화를 위한 지구조성 및 시설지정 등을 규정
- 수요 창출과 산업의 신규진입을 유발하도록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 창업지원이 법에 포함되고, 해외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 그리고 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책 및 양성을 위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법문 내용을 담

[표 3-3] 산업관련 진흥법제에 포함된 공통적인 입법내용

부문	주요내용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규정 • 관련 위원회의 설치 규정
산업 인프라 조성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화 규정 • 활성화 지원(세제지원, 금융지원) 규정 • 산업 수요조사, 정보관리(관련정보수집, 시스템구축) 규정 •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품질인증 규정 • 지구지정 규정 • 투자회사의 설립 등 규정
수요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기술 내지 산업의 촉진 규정(신기술지원, 창업지원)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규정 • 관련업무 종사자의 지원 내지 보호정책 등 규정 • 전문인력 양성 규정 • 연구개발(기술개발) 장려 규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 단체설립 규정

2)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법 기본체계

□ 산업육성 진흥법의 기본체계

- 산업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진흥법

- 진흥법은 해당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의 기반을 갖추고 관련 인력과 사업주체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제정되는 법으로,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법체계나 특정 산업발전법 제에서는 통일된 법적 기본체계 보유
- 산업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진흥법 기본체계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산업디자인 진흥법』을 기준으로 다른 진흥법을 검토한 결과
 - 아래 표의 내용과 같이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과 산업 인프라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산업 규모화 등이 핵심적 과제이고, 이 사항을 법률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표 3-4] 산업육성을 위한 진흥법의 기본체계

① 계획수립	② 전문인력 양성	③ 국제 표준화	④ 연구 및 개발지원
⑤ 사업지원	⑥ 진흥원(협회, 전문회사)	⑦ 통계(DB구축)	⑧ 해외진출 지원

- 산업육성의 기반 마련을 위한 진흥법 기본내용
 - 진흥원(협회)과 더불어 전문회사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며 진흥원(협회) 운영과 관련된 재원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음. 통계의 경우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디자인 진흥법』 등에서 명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산업디자인 진흥법』에서 전문회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한국디자인 진흥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의 경우 재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산업육성을 위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기본체계
 - 타산업 진흥법 입법례의 공통적 기본체계에 준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진흥 규정을 선정하면 아래와 같음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관련 시책의 수립 및 집행 관련된 사항을 명시할 기본계획의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태조사, 정보체계 구축, 표준화 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을 산업 진흥법으로서의 기본적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의 수요 창출과 신규진입을 육성하여 건축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창업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진흥시설 지정, 연구·개발 등을 포함
-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관련 업무종사자 지원정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규정, 고용 촉진, 이를 위한 기구 설치 등을 규정
-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형성을 위한 업무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더불어 건축서비스산업에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할 건축진흥원 설립 규정

[표 3-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체계

부문	주요내용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집행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 관련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등
산업 인프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 • 표준화 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
수요의 창출과 산업 신규 진입 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 •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장려 등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 관련 기구(협회, 단체 등) 설치에 관한 규정 • 관련업무 종사자의 지원 내지 보호정책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진흥원 설립

□ 국제수영센터(National Swimming Center)⁴³⁾

• 개요

- 워터큐브(Water Cube)라 불리며, 2008 베이징 올림픽 주경기장 맞은편에 위치함
- 中建国际(China Construction Design International), PTW Architects, ARUP가 함께 설계했고, 9만 m^2 의 면적으로 1만 7,000석 수용 가능

• 특성

- 워터 큐브는 물을 구조적 개념적 '라이트 모티브'로 연관시켜 중국의 전통과 역사의 가옥에 기본적인 형태인 사각형과 연계
- 신소재 ETFE가 건물의 외벽을 감쌌. ETFE와 그 안에 채워진 공기로 태양열을 20%씩 축적하고 축적된 에너지는 수영장 물의 열소스로 사용되고 건축물의 냉난방 기능을 수행하여 연간 30%의 에너지 절약
- 레이어 공학, 재료의 분야에서 환경 보호 등으로 '그린 올림픽'의 개념을 성공적으로 실현시킨 세계적 친환경 건축물로, 불가능할 것이라던 건축물 프로젝트가 성공됨으로써 최신 현대건축을 구현해낼 수 있는 국가로 중국의 위상 높아짐



[그림 3-1] 국제수영센터

43) 베이징올림픽 개최위원회, 「The official website of the Beijing 2008 Olympic Games」
<http://en.beijing2008.cn>.

3) 건축서비스산업 특성에 따른 사항

① 발주방식의 다양화

- 발주방식의 구분
 - 설계부문의 발주방식은 시공, CM·감리 부문 등 기타 발주방식과 마찬가지로 낙찰자결정방식(Method of Selection)과 대가지불방식(Method of Payment)에 따라 구분
 - 낙찰자결정방식으로는 일반적으로 ① 건축설계경기, ② 사업수행능력평가(PQ)방식, ③ 가격입찰(Lowest Bid)이 일반적 방식이고, 대가지불방식으로는 ① 실비정산, ② 요율, ③ 총액, ④ 단가 등 공사계약의 일반적인 방식이 동일하게 적용

[표 3-6] 발주방식의 구분

구분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당법령
낙찰자 결정방식	건축설계경기		건설기술관리법(령) 제38조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관리법(령) 제38조
	가격입찰		국가계약법(령) 제16조, 제42조
대가 지불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국가계약법 제15조 엔지니어링진흥법 제10조 건축사법 제19조의3
	공사비용율에 의한 방식		
	총액계약		국가계약법(령) 제7조, 제8조
	단가계약		국가계약법 제22조
	실비정산계약		
기타	성능설계방식		

- 현행 발주방식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현행 턴키위주의 발주방식은 창의성과 예술성이 중요한 건축공사에서는 적용의 한계가 있으므로, 턴키방식에 의한 발주를 최소화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및 설계공모 방식 등 가치중심의 발주방식을 활성화할 필요
 - 설계공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제출물에

대한 설계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부담도 줄여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 공공건축의 발주방식

- 창의성, 디자인 품질 확보가 중요한 공공건축물이 사업관리 편의 등으로 인해 토목·기술용역에 적합한 발주방식으로 진행
- 특정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도입된 턴키제도가 사업관리 편의 및 절차 간편 등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선호되며, 과중업무 및 감사부담으로 인해 설계공모 기피 또는 단순 가격입찰로 사업에 적합한 설계자 선정에 한계
- 건축설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 평가위주로 발주방식을 개편할 필요

② 표준화 기반조성

□ 표준화기반의 필요성

- 참여자간의 의사소통 중요
 - 건축물 조성은 다양한 주체의 협력에 의해 완성되는 과정으로 수많은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요구하는 작업임. 이를 효율화하고 산업 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에 대한 기반조성이 필수적 부분
 -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건축물조성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표준화를 위한 BIM의 의미

- BIM의 개념
 - BIM은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포함되는 모든 정보를 생산·관리하고 각종 도서, 즉 평면도, 입면도 등을 즉각적으로 생성하는 통합도구로써⁴⁴⁾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설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속성정보가 포함된 공통 모델을 통해 도서뿐만 아니라 재료, 수량, 단가, 규정과 같은 필요한 정보도 자동으로 추출

44) 한주연 외(2009), "BIM 적용을 통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표준화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p.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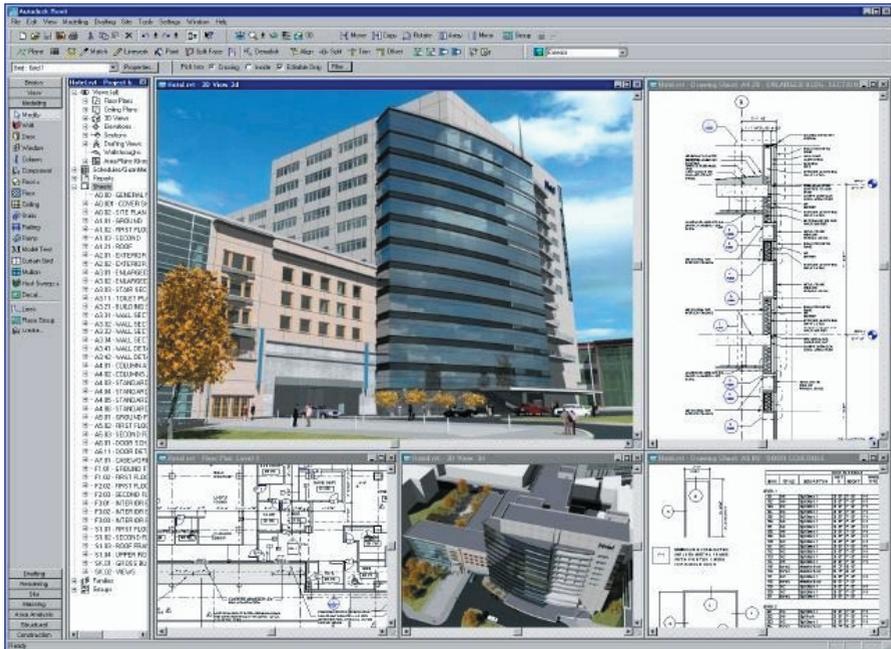
- BIM과 표준화

- 미국의 경우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여러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표준화 지구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 지침(NBIMS)를 발표하고 정부 산하기관에서 BIM 포맷을 납품표준으로 채택하는 등 BIM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⁴⁵⁾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개념 및 작동원리

- BIM은 건설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와 같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간에 필요한 정보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건설 비즈니스 정보모델
- BIM의 하부구조는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온 솔리드 모델링, 파라메트릭 디자인, 공간처리 기법 등을 포함하는 캐드이고, 그 위에 엔지니어링 분야별 다양한 속성정보가 포함된 설계모델을 올린 구조



[그림 3-2] BIM 작업 인터페이스

45) 서종철 외(2009), “국내 건설 공공발주에서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p.24.

③ 지적재산권 보호

□ 미국 건축저작권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AWCPA)

- 미국 건축저작권법의 제정
 - 미국은 1990년 건축저작권법(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AWCPA)을 제정하여 3차원 건축물 자체를 저작권 보호대상에 포함
 - 미국의 건축저작권법 제정으로 미국건축사협회(AIA)나 미국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서 건축물의 저작권등록을 권장함
- 미국 건축저작권법의 의의⁴⁶⁾
 - ① 저작권 분쟁을 대비한 공적 기록의 확보, ② 설계비를 완납하지 않은 건축주의 도면사용의 금지, ③ 저작권분쟁 승소 시 법정 피해보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 등의 관점에서 건축물의 저작권등록이 필요
 - 더불어 건축물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벌칙 규정을 두어 건축주나 제3자의 허락 없이 도면을 이용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Injunction)을 받게 되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명령을 받을 수 있음

46) 윤춘섭(2006), “건축저작권법 제정 이후 미국의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현황 및 판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2(2), p.96.

□ 미국의 건축저작권법⁴⁷⁾

- 건축저작권 의미
 - 저작권법 §101 “건축저작물이란 건축물, 건축도면(plans), 제도(drawing) 등 유형적 표현매체에 구현된 건축물의 디자인”을 말함
 - “건축저작물은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의 공간과 요소의 배열 및 구성을 포함하지만 개개의 표준적인 요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건축물의 저작권 적용 범위를 규정
- 건축저작권법 대상
 - 저작권법 §101에 따라 ‘건축저작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건축물의 디자인일 것 (design of a building)’이라는 요건과 ‘유형적 표현매체에 구현된(embodi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이라는 요건으로 구분 가능
 - 첫 번째 요건, ‘디자인’은 디자인에 있어서 종합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의 공간과 요소의 배열 및 구성을 의미함. 이때 ‘전체적인 형태(overall form)는 건축물의 전체적인 외양을 의미’하는 단순 개념이며, ‘공간과 요소의 배치, 조합(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spaces and elements)’에는 방, 출입문, 창문, 벽장의 치수, 배치, 위치 등이 포함
 - 두 번째 요건, 건축물, 건축설계도, 도형, 모형, 입면도, 청사진, 컴퓨터 데이터나 3차원의 초안 등을 포함
 - 단 어느 건축에서나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요소나 품목(individual standard features)은 포함하지 않음

□ 건축저작권법 제정 후 보호 사례

- Value Group vs. Mendham Lake Estate(뉴저지, 1992)
 - 동일 지역 내 경쟁 관계인 두 부동산개발사 간의 도면 불법복제에 관한 것으로 법원은 다양한 정황 근거를 참작한 후 피고의 주택도면이 원고의 것과 매우 흡사함을 인정하여 공사중지를 명령함

47) 손흥수(2008),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v.108, pp.131~163.

□ 콜로세움(Colosseum)

- 개요

- 콜로세움은 네로 황제의 황금 궁전(도무스 아우레스)의 정원에 있던 인공 호수를 메운 자리에 세워짐. 공사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에 의해 72년에 착공되어 8년 후 티투스 황제 때인 80년에 준공
- 콜로세움은 높이 48m, 둘레 500m 등 경기장 내부의 길이 87m와 폭 55m라는 당시에 건립된 건축물 가운데 최대의 건축물임

- 특성

- 콜로세움은 608년까지는 경기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중세에는 군사적 요새로 이용되다가 그 이후에는 성당이나 궁전 등의 건축에 사용될 자재의 공급터가 됨
- 콜로세움은 로마역사의 증표로 찬란했던 시대의 기술과 정신을 표현하며, 이탈리아라는 국가를 이미지화시켜주는 상징적인 건축물일뿐 아니라 선조의 빛나는 건축문화를 유산으로 한 관광대국으로 이끌어줌



[그림 3-3] 이탈리아 콜로세움

3. 건축문화 향상 기본내용 도출

1)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기초 논의

□ 건축에 대한 논의

- 건축이 가지는 다층성
 - 건축은 인간의 삶을 위한 공간 창조라는 본질적 역할에서 기인하여 인류의 역사를 함께 하며 인간의 정신과 상호작용으로 그 의미의 층위를 다양하게 형성

“건축이란, 건축물의 견고성을 보장하고 안락함을 충족시키는 데 몰두하는 인간이 실용성이라는 단순한 의도보다 한 차원 높은 의도를 갖고서 우리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기쁨을 주는, 서정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창조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다” (장 장제르(1997), 「르 코르뷔지에 : 인간을 위한 건축」, 시공사)

- 시대와 사회를 대변하는 문화로서의 건축
 -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는 “건축은 시대 정신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정의하며 건축이 시대의 정신적 결정체로서의 역할을 강조
 - 또한 리처드 로저스(Richard G. Rogers)는 건축물이라는 공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보고, 그 사람들의 집합인 사회에 대한 건축의 책임에 주목
 - 이와 같이 건축은 시대정신을 표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그 시대와 사회의 문화를 형성

미스 반 데 로에 :

“건축은 시대 정신의 표현이어야 한다” (김석철(2005), 「20세기 건축」, 생각의 나무)

리처드 로저스 :

“건축은 사회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건축에서는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입니다. 건축의 형식은 건축이 섬기는 사회에서 나옵니다. 건축 형식이 사회를 빛는 것이 아닙니다.” (Andrew Zuckerman, 「Wisdom 위즈덤」, 이경희 역, 샘터)

□ 건축과 문화의 관계

- 건축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장치이자 결과
 - 건축과 도시는 궁극적으로 인간행위의 공간이며 결국 삶을 영위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은 인간과 사회를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그 삶이 표현되는 결과물
- 건축은 문화의 매개물이며 결과물
 - 문화를 생활양식과 사고양식으로, 삶의 총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건축은 삶의 총체를 담아내고 표현하는 결과물이며 동시에 인간의 사고와 삶의 양식이 스며든 것으로 문화를 형성하고 계승함으로써 문화를 구현하는 매개물

□ 건축문화의 융성을 위한 산업적 기반 필요

- 건축은 기술과 예술의 결합
 - 건축은 건축물을 통해서 구현되는 물상으로 건축의 본질적인 기능인 삶의 공간 창조를 위해, 그리고 보다 우수한 건축을 위해서는 기술과 예술적 기반 필요
 - 현재까지 지어져 오면 인류의 역사를 표현해내는 건축물은 건축에 대한 풍요로운 정신적 기반에 기술적 여건이 합쳐져 가능하였고, 후대까지 영속될 수 있는 건축과 건축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술로서의 건축설계와 기술을 접목한 건축설계가 함께 가야 함
 - 이와 같이 건축설계를 기술로 보는 관점과 예술로 보는 관점을 융합하여 탄생한 ‘건축서비스산업’은 국가의 건축문화 향상에 큰 기틀을 형성하는 기본 개념

2)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주요 요소

①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 지역 건축문화 보존의 필요성

-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문화 추구
 - 지역적 특색을 가진 건축물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 지역의 건축문화는 지역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밑거름으로 작용하고 지역커뮤니티의 특징적 공간 형성 가능
 - 지역성을 가진 건축, 토속적 건축은 현재 인류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ility)의 기본적인 개념이기도 함
- 지역의 고유건축물 및 근대건축물 등의 보존
 - 지역의 특징적 풍토에서 형성된 건축물과 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자리 잡은 근대건축물 등은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의 역사성을 표현하는 대표적 건축물로, 이를 대상으로 보존과 활용을 실시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활성화 필요

□ 근대건축물을 통한 지역건축문화 활성화 방향

- 부처간 협의 체계 및 마스터플랜 구축 필요⁴⁸⁾
 - 근대건축물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서는 주로 예산지원의 지속성 부족, 지역의 상대적 불평등, 민간부문의 근대건축물 보전 및 활용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
 -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들을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체계가 필요하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마스터플랜이나 내부 지침 마련 필요
- 근대건축물 멸실방지를 위한 지원·보전제도 정비⁴⁹⁾
 - 목록상 기재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통해

48) 권영상 외(2009),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62~67.

49) 상계서, pp.68~71.

행정기관과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근대건축물의 멸실과 훼손의 방지 필요

- 근대건축물을 주변의 도시공간 관리체계와 연동하는 방법, 도시공간정비 시 인근지역을 활용한 대토방식으로 치환하는 방식 등의 근대건축물 멸실 방지를 위한 접근 필요

□ 등록문화재⁵⁰⁾

- 근거

-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시행 2011.10.15) 제53조에 근거한 제도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개요

- “지정문화재가 아닌 근·현대시기에 형성된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 형태의 근대문화유산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지정대상으로 함
- 근대는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생성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건축물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대문화유산의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보존·관리하여 문화유산으로 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도입배경

- 근대문화유산 중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호되는 것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근대문화유산은 경제적 논리에 입각한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철거, 훼손되었거나 될 위기에 처해짐
- 기존 문화재 지정제도로는 근대문화유산의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동시에 문화재 보호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보완적 제도로써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

50) 문화재청, <http://www.ocp.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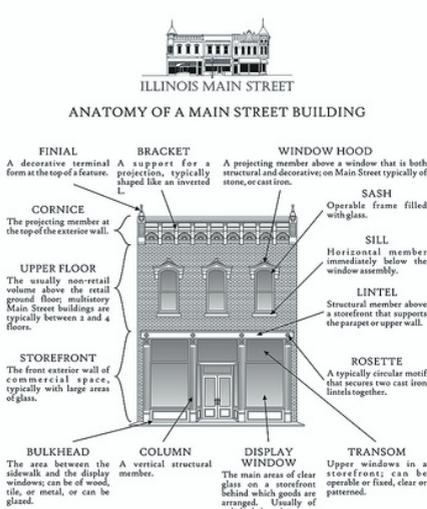
□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Main Street)⁵¹⁾

• 개요

- 미국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의 메인스트리트 센터(The National Trust Main Street Center)에서는 각주의 메인스트리트 기준을 관리하고 메인 스트리트를 적용하는 커뮤니티를 보조할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역사보존의 기준 조율, 세제 혜택 등 제도를 추진
- 각 지역자치단체의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에서는 지역의 역사 보존 기준과 긴밀히 연계하여 메인스트리트 지역을 관리함

• 내용

- 현재 메인스트리트(Main Street) 프로그램은 크게 도시 재활성화를 위한 전략 제공, 관련 커뮤니티와의 네트워크 구축, 국가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
- 보존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 재활성화 방식을 구축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커뮤니티의 중심가로와 근린상업지역의 재생 전략을 제시하고, 30여 년간 운영되면서 구축된 방대한 네트워크를 자원으로 하여 다양한 자원과 지원시스템을 구축함
- 메인스트리트로 지정된 지역에서 기존의 건물과 건물 요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또한 그 지역의 보존가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하여 지역사회에서 보존에 대한 인지도 함양



[그림 3-4] 일리노이주 메인스트리트 지침 예시



[그림 3-5] 켄터키주 메인스트리트 사례

□ 서울시립박물관(The Seoul Museum of Art)

- 개요

- 연면적 13,433.8 m^2 로 지하 2층~지상 3층의 본관에 6개의 전시실·수장고·아트숍·세미나실·자료실·교육기능 시설 등으로 구성됨

- 특성

- 강남개발에 따른 서울시의 구조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사법부가 1996년 10월 서초동으로 이전한 후 구대법원 건물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립미술관은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모범적 사례로 역사를 기억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근대건축 보존과 활용의 시금석이 되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음⁵²⁾



[그림 3-6] 서울시립미술관

51)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http://www.preservationnation.org>.

52)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좋은 건축 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 pp.107~113.

② 우수건축물 지정

□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우수건축물 지정제도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의 필요성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는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모든 건축물이 지정대상으로 가능하며, 건축심의에 의하여 관리되지 않아 소외되기 쉬운 중소규모의 건축물을 지정 대상으로 하여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⁵³⁾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를 위한 기본 요건⁵⁴⁾
 - 디자인 평가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디자인 개선작업을 위해서는 건축사·건축주와 함께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
 - 우수건축물 지정을 통한 아름다운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설계 초기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의 마련과 재평가를 통하여 디자인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실효성을 확보하는 절차 마련이 요구
 - 지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 건축가, 시공자 등 모두가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하고, 강제적 규제 보다는 인센티브 방식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끄는 ‘지정제도’의 체계 마련이 필요함. 또한 지정을 받은 건축물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좋은 건축물의 홍보 및 시상 등의 지원 방안 모색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의 평가
 - 우수건축물 지정제도는 도시 품격향상과 건축문화 수준 향상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건축물의 형태, 색채, 외관 등 디자인 평

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63.

54) 상계서, pp.63~65.

가에 중점을 두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도시 속에서 개별 건축물이 갖는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춰 평가

□ 구마모토 아트폴리스(Kumamoto Art Polis, K.A.P)⁵⁵⁾

- K.A.P 우수 건축물 지정
 - K.A.P 추진상은 도시환경 및 건축문화 등의 향상을 목표로 풍부한 지역을 창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심사위원회가 기획·설계·시공 및 시설의 운용 등에 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건조물(건축물, 다리, 공원, 기념비 등의 건조물 및 이들로 구성된 일군의 시설)을 선정
 - K.A.P 선정 기존건축물은 역사적으로 우수한 기존 건축물(전통 또는 현대 건축물 모두 대상)을 선정하여 보존하기 위한 제도
- K.A.P 우수 건축물 지정 사업 개요
 - 추진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커미셔너(commissioner) 제도를 도입하고, 커미셔너는 설계 추진 방식을 결정하여 적성과 능력을 갖춘 국내외의 건축가를 추천하거나 설계 공모 등을 실시하여 그 사업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
 - 설계자는 사업시행자 및 커미셔너 등 해당 건축물(구조물)에 관계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거듭하면서 최적의 설계를 추진하고, 건축관련 학자와 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추진검토 위원회, 아트폴리스 사무국 등이 계획을 지원



[그림 3-7] 구마모토 현립미술관 분관

③ 설계의도의 구현

- 설계의도 구현의 필요성
 - 건축물의 시공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하도록 하여 당초의 설계취지를 구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설계의도가 완공 건축물에 나타나도록 하고, 특히 상징성이 있거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건물의 경우 설계자가 시공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의도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 관련 현황
 -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설계자가 시공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유지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으나, 국내의 경우 감리제도가 별도로 도입되어 설계자와 분리된 상태로 운영

④ 공공건축 품격 제고

□ 공공건축의 정의 및 의미

- 공공건축의 정의⁵⁶⁾
 - 협의 : 공공부문이 주관이 되어 발주하고 공공의 예산으로 지어지는 시설을 의미
 - 광의 : ① 공공의 이익과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시설, ② 집합적 삶의 차원(공공행정, 교육, 복지, 문화 등)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건축

[표 3-7] 법적 근거에 의한 공공건축의 정의

법조항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대한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정의) '기반시설'의 종류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5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6), 「우수건축물 사례조사-일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pp.10~11.

56) 염철호 외(2010),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p.19~23.

법조항	정의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에 대한 정의	1.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조(공동이용시설)의 정의	1.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2.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3.그 밖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출처 : 김성홍 외(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공공건축의 의의

- 공공건축은 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관련되며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도시의 이미지와 도시환경 결정에 중요한 인자이기에, 우수한 공공건축은 건축문화자산으로서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공공건축의 문제점⁵⁷⁾

- 권위·위엄 등 외형에 치우친 공공건축

- 국내 많은 지자체의 청사는 고전적 요소의 모방, 대칭적인 공간구성, 육중한 재료의 사용 등 권위적인 형태를 가지며, 새로운 공공청사는 지나치게 외형 디자인이 강조되어 호화청사 문제 야기

- 지역여건 및 수요에 부적합한 과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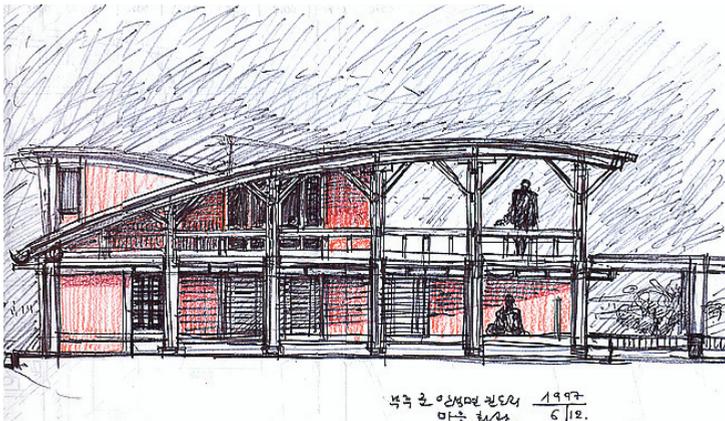
- 지자체장의 전시행정으로 인한 문화시설, 공공청사 등의 시설 대형화 경향을 보이고, 특히 지방 문화시설 등의 경우 사용자 규모에 비해 과대한 규모의 시설이 설립되는 등 비합리적 규모의 공공건축물의 조성이 빈번함

57) 상계서, pp.42~44.

- 지역주민의 접근과 이용 불편
 - 시설계획 시 주민 이용측면 고려가 부족하여 접근성이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됨. 예를 들어 문화시설, 도서관 등 시민의 일상적인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주거지역과 먼 외곽에 입지하여 낮은 접근성을 보임
-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효율화 대책 및 지원 미약
 - 최근 신축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은 강화되었으나, 기존 공공청사에 대한 에너지 소비 실태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상황임. 기존 건축물 부문이 담당해야 할 감축량이 약 70% 임에 따라 이를 위한 공공의 역할 필요

□ 무주 공공건축물⁵⁸⁾

- 무주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는 건축가 정기용의 설계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 지역 주민들에게 본연의 정체성을 되돌려주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함
- 전라북도 무주군 일원으로 무주군청사, 공설운동장, 장터 리노베이션, 무풍·부남·적상·안성면의 4개 면사무소, 마을회관, 농업인회관, 박물관 청소년의 집 등 최근 10년 동안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이 이루어짐
- 진도리 마을회관은 주민들이 가진 흙집의 부정적 편견을 설득을 통해 해소하여 조성된 국내 최초의 흙으로 지은 공공건축물로 전통적 건축 언어, 즉 사랑방, 정자 등을 설계안에 반영함



[그림 3-8] 무주군 진도리 마을회관(건축가 정기용의 설계안 스케치)

□ 런던 시청사(London City Hall)

- 개요

- 템즈 강변에 위치한 런던시청은 전체형상이 달걀처럼 생겨 '유리달걀'(the glass egg)로 불리기도 하며 이는 영국의 대표적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의 설계로 높이 45m, 총 10층

- 특성

- 런던시청사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물로 건물을 남쪽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직사광선을 피하고 자연적으로 그늘이 형성되도록 하여 냉방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패널 아래쪽에는 단열판을 설치하여 열손실 감소와 창문을 통해 자연 환기를 유도함. 동일 크기 건물 대비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4분의 1 수준으로 운영
- 런던시청사는 런던시가 표방하고 있는 녹색건물(green building)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건축정책 방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의 녹색화를 위한 좋은 롤모델 기능 수행



[그림 3-9] 런던 시청

58)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좋은 건축 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 pp.59~69.

⑤ 공공건축 지원센터

□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필요성

- 공공건축의 계획,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등의 문제점
 - 개별적으로 행해지는 공공건축의 공급계획, 비전문적이며 부서간 소통이 안되는 행정관리체제 하에서 공공건축 관리, 행정담당자에 의한 일방향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등이 문제로 지적⁵⁹⁾
-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
 - 공공건축의 계획 및 건립이 단순한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공공건축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임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지원조직인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건립 필요

□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역할

- 공공건축 관련 업무 지원 및 보조⁶⁰⁾
 -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기능은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 더불어 공공건축의 유지·관리 지원,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공공건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밖의 공공건축 지원에 관한 사항이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주요 업무로 예상됨

59) 조준배 외(2008), 「장소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55~157.

60) 김진욱 외(2009),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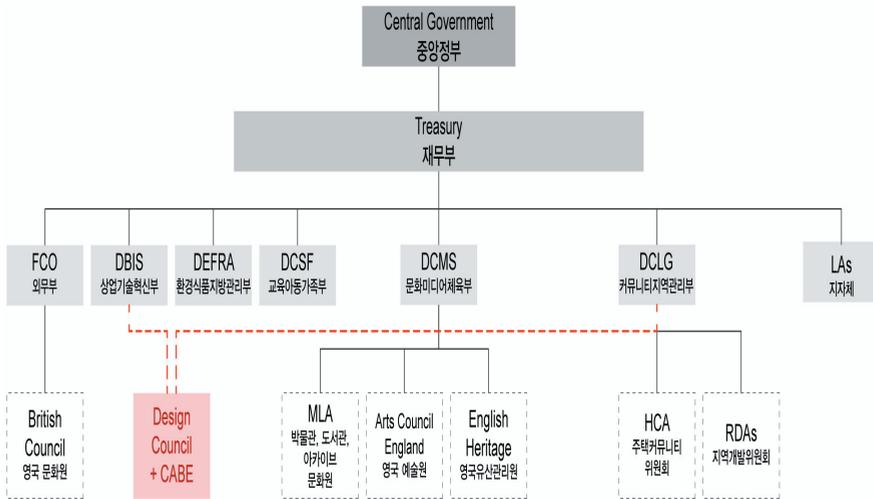
□ 영국 CABA(Commission for Architecture and the Built Environment)⁶¹⁾

• 개요

- 영국의 건축·건조환경위원회(CABA)는 총리 산하의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공공 건축물 및 중요한 민간부문 사업에 대한 자문형 기구
- 90년대부터 공공건축 조성에 대한 비용의 10% 절감과 사용기간 연장을 목표로 건설산업을 전면 개편하면서 형성된 조직

• 주요역할

- 'Enabling' 제도라는 기획단계의 컨설팅을 두어 민간전문가의 사업 디자인 방향·목표 설정, 설계자 선정과정 등을 지원하고, 설계단계의 'Design Review'는 CABA 사업담당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패널로 설계안 검토 및 평가
- 건축 유형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간행물 발간, 공공건축 데이터베이스구축 및 지침서 개발하고 좋은 건축물과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활동 실시



[그림 3-10] 2011년 CABA 및 디자인위원회 합병 이후 조직 위치

출처 : 서수정(2011, p139)

61)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지원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138~140.

⑥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

□ 세계화 속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전통문화를 통한 자국문화 및 국가경쟁력 향상 노력
 - 주요 선진국은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자국문화 및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일본의 ‘신일본양식(NEO Japanesque)’, 미국의 ‘창조적 미국(Creative America)’ 등⁶²⁾

[표 3-8] 주요 선진국의 자국문화 향상 노력

구분	내용
일본의 ‘신일본양식’ (NEO Japanesque)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 ‘신일본양식(NEO Japanesque)’이라는 새로운 국가 브랜드를 설정하여 정부차원에서 전통상품과 지역브랜드 육성 노력
미국의 ‘창조적 미국’ (Creative America)	영광스러운 과거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면서 미래의 미국을 혁신하는 데 필요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

-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 현재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도시들의 모습을 정체성과 역사성을 가진 도시로 개선하기 위해 전통건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특히 한국 고유의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 증가
 - 삶의 질적 증대에 대한 시대적 요구로 인해 한옥 등 전통적 건축공간이 가지는 우수성이 재조명되면서 전통건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한옥을 활용한 호텔, 아파트 등 전통건축을 응용한 사례 증가

□ 한옥 및 한옥마을의 개념

- 한옥 및 한옥마을 정의
 - “한옥은 주요구조부가 한국 고유의 전통적인 목구조방식으로 지어진 건물로, 자연재료로 마감된 전통적인 외관을 갖춘 건물”을 의미⁶³⁾

62) 중소기업정책연구DB, <http://db.kosbi.re.kr>.

- “한옥마을은 한옥이 집단으로 존치되어 있거나 새롭게 조성된 지역으로서 한옥이 밀집되어 전통적인 경관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⁶⁴⁾

[표 3-9]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중 한옥에 대한 정의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한옥”이라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 중 전통미를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2조 제1항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조 구조로써 한식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경주시 건축조례 제39조	“한옥”이라 함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으로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제2조	“한옥”이라 함은 주요구조부가 목구조로서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표 3-10]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중 한옥마을에 대한 정의

구분	내용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한 지역
전주시 한옥보전지원조례 제2조	전통한옥지구라 함은 전통도시한옥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물과 골목길 등의 외부공간을 적극 보전해야 하는 지구
전라남도 한옥 지원 조례 제2조 및 규칙 제6조	한옥보존시범마을 : 한옥이 집단적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및 보호가 필요한 지역 한옥관광화사업 : 관광객 유치에 위한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및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 등(마을단위 조성사업지구 내에서 한옥을 10호 이상 집단으로 신축하는 경우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63) 권영상 외(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pp.15~16.

64) 상계서, pp.15~16.

□ 신라밀레니엄파크 라궁

- 개요

- 신라밀레니엄파크 라궁은 경상북도 경주에 위치한 전통한옥 호텔로 구가도시건축 사무소에서 설계하였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연면적 557평, 동서로 98m, 남북 38m로 모두 16개의 객실영역과 식당 및 라운지가 있는 관리영역으로 구성

- 특성

- 라궁은 최초의 한옥호텔로 객실은 모두 독립적인 마당과 전망을 갖추고 있으며, 회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채를 이루고 있음. 여기에 전면으로 인공연못을 두고 후면에는 중정과 회랑을 둠
- 건축주, 건축가와 목수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했고, 목공기계의 개발 등 혁신적인 공법으로 공기를 단축시켰다는 점에서 '한옥의 현대화'를 보여주는 사례로 역사적인 한옥유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옥유형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의 설계가 높이 평가됨



[그림 3-11] 전통한옥호텔 라궁

□ 한옥 등 전통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 전통문화의 보전 및 계승의 의무
 - 현행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 명시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한옥으로 대표되는 전통건축에 대한 보전·계승은 국가의 주요한 의무임
- 전통건축 관련 현행 법제도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과 문화재지정 및 등록 등에 관한 조문을 포함
 -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법으로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인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고도보존심의위원회, 고도 및 지구 지정, 고도보존계획, 인허가의제 등을 규정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 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사찰의 지정등록,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명시

[표 3-11] 전통건축 보전·계승과 관련 법률

법률	전통건축 보전·계승과 관련 조문 예시	
문화재 보호법	제2장 문화재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3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10조 문화재 기초조사
		제13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16조 문화재 전문인력의 양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5장 등록문화재		

법률	전통건축 보존·계승과 관련 조문 예시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5조 고도보존심의위원회
	제7조 고도의 지정
	제8조 지구의 지정 등
	제9조 고도보존계획
	제12조 인·허가 등의 의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전통사찰의 존엄 및 수행 환경 보호
	제4조 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제5조 지정해제와 등록말소
	제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제10조의2 전통사찰의 보호 및 지원

□ 한옥 등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제도 추진 방향

- 전통건축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⁶⁵⁾
 - 현재 전통건축의 보존에 대한 규정은 문화재 관련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옥에 대한 규정은 법률상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음
 - 건축문화의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전통건축을 보존·계승하기 위한 건축적 관점에서의 보존·계승 법률조문이 필요하고, 특히 한옥에 대한 보존·진흥을 담는 규정이 필요
- 한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정책 방향
 - 전통건축과 관련된 현황을 보면 현재는 전통적 건축형식 및 기술의 소실 위기이며, 관련 연구는 문화재급 전통건축과 기존 한옥의 보존방안 등의 연구에 치중
 - 전통건축을 문화재로서 보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전통건축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 또한 연구개발을 통해 한옥을 포함한 전통건축의 디자인, 기술력, 성능을 높여 전통건축의 활성화 가능

65) 권영상 외(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pp.79~80.

□ 전주 한옥마을⁶⁶⁾

• 개요

- 전주 한옥마을은 전주시 완산구 교동·풍남동 일대 7만 6320평에 700여 채의 전통 한옥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문화공간인 전주전통문화센터, 제조과정 관람과 시음까지 할 수 있는 전주전통술박물관, 온돌과 대청마루 등을 숙박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전통 공예품을 전시하는 전주공예품전시관 및 명품관 등이 자리함

• 특성

- 1910년대부터 주거지역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다가, 1938년 일제의 '시가지 계획령'에 따라 교동 일대를 격자형 블록의 도심 주거지로 개발하였고, 1930~40년대에 걸쳐 절반 정도의 한옥이 지어졌음
- 1977년 한옥마을 보존지구로 지정된 뒤, 2002년 10월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 제정위원회'에서 지금의 이름 '전주 한옥마을'로 바뀜. 역사적 전통과 도시적 구조를 존중하고, 계속적으로 한옥보존과 마을가꾸기 실시하여 지역의 역사성과 전통을 보전·계승하는 공간으로 평가됨



[그림 3-12] 전주 한옥마을

66)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좋은 건축 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 pp.189~211.

제4장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및 해설

1. 총칙
2.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4.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5.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6.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7. 보칙
8. 벌칙
9. 부칙

1. 총칙

□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건축 문화의 진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규범의 목적을 밝혀 법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함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건축문화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건축서비스사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건축서비스사업자”란 건축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국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
7.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른다.

- 개요
 - 용어의 정의에서는 법안의 용어 중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에 대해 그 뜻을 별도로 규정하여 의미를 분명히 함
- 해설
 - 건축서비스 : 건축·토지와 관련된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등의 행위
 -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건축서비스사업 : 건축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건축서비스사업자 : 건축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공공건축 : 공공기관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 한옥 :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벚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
-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기본법』 제3조에 따른 용어의 예에 따름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사업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요
 -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주체의 일정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은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서비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의 진흥·지원과 관련된 개별법과의 적용관계를 설정함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의 진흥·지원의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관련 개별법은 규정하는 각 영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그러므로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의 진흥·지원에 관한 일반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우선됨

□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 협의한 후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가건축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3.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8.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10. 공공건축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국가적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므로, 지식집약형 산업인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 수립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규정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를 설정
- 상호관련성 있는 행정수단을 대상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활동기준과 또는 그 설정행위를 정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과의 협의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② 건축서비스산업의 분야별 진흥정책, ③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④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⑤ 건축서비스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⑥ 건축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⑦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및 창업 촉진에 관한 사항, ⑧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⑨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 공공건축 발주방식의 다양화 및 품격제고에 관한 사항, ⑪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

- 기본계획은 총괄적 내용을 담으며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계획이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별도로 명시하여 기본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협조하도록 명시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행정활동의 목표 설정이 가능하고 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동력을 확보

- 입법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1. 8.26] [법률 제10724호, 2011. 5.25, 일부개정]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산업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총괄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중·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중·장기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 및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현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기반이 되는 기초자료가 미비한 상태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에 기초자료 형성과 이에 수반되는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과 통계작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타 중앙행정기관의 요구 시 국토해양부장관은 협동으로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
 - 제1항의 기초자료 확보와 통계작성을 위해 실태조사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건축서비스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더불어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단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는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함.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사항, 즉 주기·방법 및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 관련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고,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 정책 실시를 위한 기초자료를 획득하여 정책자료로 활용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7조(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합동으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제7조(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이하 이 조에서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산업적 관점의 전략적 고급 정보체계 구축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보체계 구축은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지식축적과 진흥을 위한 기반구축으로, 정보체계의 구축 의무와 구축 대상으로 하는 정보에 대해 명시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구축은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식정보를 구축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대응하는 정보의 획득, 축적, 공유, 활용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지식의 체계가 확대되고 다양해지며 깊어짐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임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은 ① 국내외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② 건축서비스사업자의 수주실적에 관한 사항, ③ 국내외 건축서비스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④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⑤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현황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명시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을 명시
- 기대효과

- 급변하는 산업의 흐름에 대응하는 정보의 획득, 축적, 공유, 활용의 선순환 과정을 통해 지식의 체계가 확대되고 깊어짐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며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국내외 엔지니어링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수주(受注) 실적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제13조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현황 및 이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 관련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제6조(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9조에 따른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등 공공 분야의 정보화
3. 제16조에 따른 지역정보화
4. 산업·금융 등 민간 분야 정보화의 지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분야별 정보보호, 국가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
6. 정보문화의 창달 및 정보격차의 해소
7. 개인정보 보호, 건전한 정보통신 윤리 확립,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지적재산권의 보호

- 8. 정보의 공동활용 및 표준화
- 9.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선
- 10.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활성화
- 11. 국가정보화와 관련된 자원의 조달 및 운용
- 12. 그 밖에 국가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제8조(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 간 공동연구의 추진 및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서비스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며, 연구·개발을 통해 선진국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 정도의 수준인 산업 전반의 효율 제고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 시책을 구현하기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명시하고 동시에 이를 위한 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이 공동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 마련
 - 개발된 연구 성과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건축서비스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선진국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해 연구·개발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산업 진흥 가능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등) ① 정부는 새로운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연구·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우선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하도록 한다.

③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국제공동연구를 포함한다)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및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의 이용·보급 등에 관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발주방식의 다양화

제9조(발주방식의 다양화)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공공건축의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주하고자 하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특성, 규모 및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서비스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주방식 및 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공공건축 발주방식의 경직성으로 중소기업체와 신진건축가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요 건축물의 창조성과 예술성이

부족한 사례가 늘고 있어 발주방식의 개선 요구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와 우수한 공공건축 설계의 선택을 위하여 다양한 건축서비스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규정
- 해설
 - 공공기관은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특성과 규모,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도록 해야 하며, 우수한 건축물 등을 조성하기 위해 정해진 용도 및 규모의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규정
 -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서비스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 기대효과
 - 우수한 공공건축 설계 선정으로 건축문화 향상에 기여하며, 품질에 기반한 건축서비스산업의 균형발전 유도
 - 건축공사에 적합한 발주방식을 선정하여 공공건축의 창의성을 제고하며 디자인품질을 유지하고, 신진 건축가 발굴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가능

□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제10조(표준화 기반조성)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설계정보 및 도서 양식의 표준화
2. 건축물 등에 사용하는 자재의 표준화
3. 건축서비스산업 발주방식의 표준화
4.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 연구 및 보급시책의 근거 마련

-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축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중 표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표준화 연구와 보급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① 설계정보 및 도서양식의 표준화, ② 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자재의 표준화, ③ 건축서비스산업 발주방식의 표준화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시책 추진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으며, 표준화를 통한 산업의 효율 제고는 건축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입법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 2010. 3.22]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11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2. 건축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 표시 활성화
3. 제1호의 건축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호에 따른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저작권법상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건축모형 및 설계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건축에 대한 지식재산권 개념이 미흡한 실정
- 개요
 - 건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 서비스 성과물의 저작권 보호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건축서비스와 관련된 지식재산권(copyright)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 근거
-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건축서비스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하며, 시책은 ① 건축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보호, ② 건축서비스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 표시 활성화, ③ 제1호의 설계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건축서비스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여 창의적 건축 서비스 산업의 보호를 통한 건축문화 향상
- 입법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 2010.10.13] [법률 제10250호, 2010. 4.12, 타법개정]

제10조(지적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데이터 등에 포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공간정보 활용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의 기술적 보호
2. 공간정보 신기술에 대한 관리정보의 표시 활성화
3. 공간정보 분야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교육 또는 홍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그 밖의 부대사업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간정보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제1항 각 호의 시책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2조(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분석 및 평가
2.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발주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의 책무를 명시
- 해설
 - 건축서비스를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 금함
 -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축서비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해야 할 시책에 대해서 명시함. 그 시책은 ① 건축서비스산업 환경의 현황분석 및 평가, ②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의 구축 지원, ③ 그 밖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함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에서 공정한 거래가 형성되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
- 입법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 2011. 5.25] [법률 제10724호, 2011. 5.25, 일부개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①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3.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제13조(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우수한 건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관련 정부사업의 참여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발굴·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뿐만 아니라 건설경기 약화에 따라 건축서비스분야 신규채용 저조, 취업자의 고용불안 등 우수 전문인력 정체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전문인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
- 해설
 -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이를 통해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적 자원인 신진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
 - 또한 전문인력을 발굴·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선정하여 그의 역량에 대한 포상을 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뿐만 아니라 건축서비스산업 관련자의 자긍심을 고취함. 특히 선정된 건축서비스 전문인은 정부사업의 참여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기회제공 가능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근간이 되는 건축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건축서비스기업의 활성화로 산업 발전의 근간 마련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등 엔지니어링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또는 제12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와 교육 및 훈련의 대상·종류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제14조(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건축서비스분야 신규채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개요

-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양성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통한 고용촉진 및 확대를 규정

- 해설

-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정부는 건축서비스 전문인력의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산업발전에 기초가 되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발전의 기초 형성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 제14조(고용 촉진)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5조 창업지원

제15조(창업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4.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우선 입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산업을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 진출이 활발해야 하며 이를 유인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의 기본인 건축서비스 관련 기업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해설

-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적·재원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① 창업자금의 지원 및 용자, ② 건축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③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④ 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우선 입주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부분으로 규정됨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의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여건 조성 가능

□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16조(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을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사업자는 직원수가 10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87%로 이들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건축서비스사업 여건 개선 필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은 건축서비스사업자와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한 근거 마련

- 해설
 - 진흥시설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 중에 하나로 현재 다양한 산업의 진흥법에서는 진흥시설과 단지에 대한 입법을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 예를 들어 자금,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부여할 수 있으나 이는 부당하지 않아야 함을 명시
 -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로 지정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을 규정
- 기대효과
 - 진흥시설 입주업체의 상호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발현, 벤처기업 집적시설과 같은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전반의 사업 여건 향상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한 건축물 등을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17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개요

- 지정되었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해설

- 제16조에 의거하여 지정되었던 건축서비스산업진흥시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에서 명시한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그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② 제16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③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두고 있음

- 입법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 2011. 5.19] [법률 제10682호, 2011. 5.19, 타법개정]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이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9조 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8조(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 방법과 이를 위해 가능한 근거 마련
-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불구하고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
- 입법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 2011. 3.9] [법률 제10445호, 2011. 3.9, 타법개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 수 있다.

□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에 위한 조사·연구
2.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3.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4. 해외진출 관련 교육훈련
5.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②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은 국내시장의 경쟁 심화에 따라 점차 대형업체 위주의 시장으로 개편되어 중소기업의 활로가 폐쇄되고 산업경쟁력 약화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규정
- 해설
 - 정부는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그에 해당하는 것이 ①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② 해외진출을 위한 행정 및 재정(각종 보증서 발급을 위한 지원을 의미) 지원, ③ 해외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협조, ④ 해외진출 관련 교육 및 훈련, ⑤ 해외진출을 위한 건축 관련 산업의 융·복합화, ⑥ 그밖에 해외 건축서비스산업 시장 개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임
 - 해외진출과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건축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세계시장에서의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건축서비스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은 건축문화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 제20조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등

제20조(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향상과 지역적 특색을 가진 건축물 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 건축문화의 향상과 지역적 특색을 가진 건축물 등의 보전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개요
 - 건축문화의 지역성을 존중하고 지역의 풍토, 역사, 환경에 부합하는 건축을 촉진하여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함
- 해설
 -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역 건축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성을 반영한 건축물 등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와 같이 지역 건축문화를 함양하기 위해 지역적 특색이 반영된 건축물 등의 보전과 관련된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
 -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건축문화 향상을 위한 시책에 대해서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기대효과
 -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나타내는 지역 건축물을 보존함으로써 익명성의 도시를 개선할 수 있으며 보다 우수한 건축문화 육성이 가능함

□ 제21조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제21조(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요
 - 품격 높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재고와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을 통해 홍보하기 위함
-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서비스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 건축물 등을 지정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지정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등의 보수나 리모델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정 지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기대효과
 - 우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지정 및 지원제도는 건축문화의 형성에 있어 기본인 우수 디자인의 건축물 창조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좋은 건축디자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 유도 가능

□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제22조(설계의도 구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는 설계한 건축물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요
 - 설계의도의 구현은 설계자가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함으로써 본래 구현하고자 하였던 설계의도를 실현하기 위함
- 해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등을 발주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함
 -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국토해양부령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
- 기대효과
 - 감리제도와 분리된 현행 제도 속에서는 건축사가 의도하였던 설계안이 시공 중 제대로 유지되기 힘든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의도 구현이 규정됨에 따라 본래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보다 명확하게 실현될 것으로 예상

□ 제23조 공공건축의 품격제고

제23조(공공건축의 품격제고) ① 공공기관은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건축이 국가와 지역의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수준의 품격을 갖춘 건축물 등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그가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타당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
3. 디자인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그 밖에 공공건축 품격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③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예산이 포함된 경우 당해 공공기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공유자산으로서 비중이 큰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이 매우 중요
- 디자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 공공건축 조성을 위해서는 전문가 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 확립과 전담조직 필요

• 개요

- 건축문화를 대변하는 주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인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

• 해설

- 국가와 지역의 건축문화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인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은 공공건축이 높은 수준의 품격을 갖춘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은 공공건축과 관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심의의 절차와 예산에 대한 사항을 명시

• 기대효과

- 국가와 지역을 대표하는 품격있는 공공건축 조성으로 녹색 건축 선도와 건축문화 향상이 가능

□ 제24조 공공건축 지원센터

제24조(공공건축 지원센터)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공공건축 지원

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공공기관을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2.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3.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4.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5. 공공건축의 유지·관리지원
6.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교육
7. 공공건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8. 그 밖의 공공건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공공건축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정부는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공공건축의 품격향상이 국가건축정책의 주요한 과제임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립이 필요한 시점
- 개요
 - 공공건축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지정
- 해설
 -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공공건축 심의를 지원하고 공공건축의 품격향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건축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업무는 ① 공공건축의 발주지원, ② 공공건축의 기획 및 관리지원, ③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④ 공공건축의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 ⑤ 공공건축물의 유지관리지원, ⑥ 공공기관 관계자 교육, ⑦ 공공건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명시함
- 기대효과
 - 공공건축의 계획부터 시공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조직의 설립으로 합리적 정책전달체계의 구축이 가능하고 이는 국고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 가능

5.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 제25조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는 제외한다)과 고유한 전통양식을 갖는 공간환경(이하 “한옥 등”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한옥등의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한옥진흥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건축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한옥 등과 연관성이 있는 위원회(이하 “한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한옥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옥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한옥 등의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3. 한옥 등의 공급·조성에 관한 사항
4. 한옥 등과 관련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한옥 등과 관련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한옥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옥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한옥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진흥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 등과 관련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제안이유
 - 우리나라 건축문화자산인 한옥과 전통적인 공간환경의 보존 및 창조적 계승을 위한 체계적인 법정계획 수립 필요
- 개요
 - 한옥과 고유한 전통양식을 갖는 공간환경의 보존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 하에서 체계적인 시책 운영이 되기 위한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
- 해설
 - 한옥진흥기본계획은 한옥과 한국의 고유한 공간환경을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매 5년마다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승인권자와 승인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며, 구체적으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가능함
- 한옥진흥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3항에 명시된 ① 한옥 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한옥 등의 관리·정비에 관한 사항, ③ 한옥 등의 공급·조성에 관한 사항, ④ 한옥 등과 관련된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⑤ 한옥 등과 관련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⑥ 한옥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한옥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
-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진흥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의 의무를 가짐
- 기대효과
 - 한옥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한옥과 전통적 공간환경의 체계적 보존·관리·활용의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 및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가능

□ 제26조 한옥 등의 등록

제26조(한옥 등의 등록) ①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옥 등의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한옥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관계 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된 한옥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옥밀집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한옥 등을 등록한 소유자가 등록된 한옥 등을 임의로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등록된 한옥 등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등록된 한옥 등에 대하여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한옥 등의 보전 및 관리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적 제도로써 한옥 등에 대한 등록 등을 실시하여 기초자료 확보 및 연계 제도 마련 가능

-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등록과 한옥밀집지역의 지정을 통해 한옥의 보전·관리와 이와 관련된 정책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에 한옥의 등록 등을 명시하며 이와 관련된 대상, 절차 등에 대해 규정

- 해설

-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옥 등의 소유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등록여부를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한옥 등을 등록한 소유자 등이 등록된 한옥 등을 임의로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옥 등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음. 또한 등록된 한옥 등에 대해서는 한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의 혜택을 부여함

- 기대효과
 - 멸실의 위기에 직면한 한옥에 대한 등록제도는 한옥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초적 제도이자 자료로 활용 가능

□ 제27조 한옥 등의 조성·정비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제27조(한옥 등의 조성·정비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등의 조성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등의 보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옥의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적 보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한옥 관련 여러 사업 및 연구를 위한 전문인력의 수요 증가
- 개요
 - 한옥의 조성·보전을 위해 한옥 관련 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과 한옥 전문인력 양성의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등의 조성 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등의 보급을 위하여 연구소, 대학 등의 기관을 대상으로 한옥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
- 기대효과
 - 부족한 예산으로 실행의 어려움이 제기되었던 한옥 조성 및 정비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한옥 관련 여러 사업과 연구를 담당할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을 통한 한옥 보전과 활용의 초석 형성

□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제28조(국가한옥센터 설치)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등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한옥센터를 설립하거나 한옥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한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옥 등의 진흥정책 연구·조사
2. 한옥 등과 관련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3. 한옥 등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4. 한옥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5. 그 밖에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한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안이유
 -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지원하고 한옥 등의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 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국가적 차원의 전문기관 필요
- 개요
 - 한옥 등의 보전과 진흥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내지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한옥센터의 업무를 규정함
-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정책을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국가한옥센터의 설립 또는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한옥 등의 보전과 진흥 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한옥센터의 업무를 ① 한옥 등의 진흥정책 연구·조사, ② 한옥 등과 관련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육성, ③ 한옥 등과 관련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 ④ 한옥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 등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기타 국가한옥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명시함
- 기대효과
 - 국가 한옥정책을 전담할 전문기관의 설립으로 한옥 보전과 진흥에 대한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이 가능

6.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 제29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제29조(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건축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진흥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④ 건축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제6조 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3. 제7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사업
4.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5.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6. 출판 및 홍보사업
7. 교육·연수사업
8. 국제교류·협력사업
9.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건축박물관 설립 및 운영
10.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건축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건축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안이유
 -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 필요
- 개요
 -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축문화진흥원의 설립을 규정
-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건축진흥원”을 설립하거나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건축진흥원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진흥원의 성격과 임직원에 관련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문화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명시함. 그 사업은 ①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② 제6조 제1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 제7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정보체계 구축사업, ④ 제10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표준화 연구 및 보급 지원, ⑤ 제15조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창업지원, ⑥ 출판 및 홍보사업, ⑦ 교육·연수사업, ⑧ 국제교류·협력사업, ⑨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건축박물관 설립 및 운영, ⑩ 그 밖에 건축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명시
- 건축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고,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기대효과

-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추진체로서 산업발전의 견고한 기반 마련에 기여

• 입법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88호, 2009. 5.21, 일부개정]

제11조(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설립 등) ①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分院(分院)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진흥원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개발 지원사업
2. 전시사업

3. 출판 및 홍보사업
4. 정보화사업
5. 교육·연수사업
6.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
7. 국제교류·협력사업
8. 정부의 위촉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0조 출연금

제30조(출연금) ① 정부는 건축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총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요
 - 정부의 출연금이 건축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건축진흥원의 운영과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를 위해 정부 출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 예산요구서 등의 작성과 제출에 대해 명시

□ 제31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제31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건축진흥원은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개요

- 건축진흥원이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건축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입법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88호, 2009. 5.21, 일부개정]

제13조(자료의 제공요청 등) 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 산업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수집·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3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3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건축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요

- 건축진흥원은 매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

- 해설

- 건축진흥원은 매년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진흥원의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를 수령한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

- 입법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88호, 2009. 5.21, 일부개정]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3조 보고 및 검사

제3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개요

-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장부, 서류 등에 대해 검사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진흥원이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수행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건축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입법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 2009. 5.21] [법률 제9688호, 2009. 5.21, 일부개정]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개요
 - 건축진흥원의 전·현직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엄수의 의무를 규정
- 해설
 - 건축진흥원의 전·현직 임원이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

□ 제35조 건축문화특별회계의 설치

제35조(건축문화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과 한옥 등의 보존·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문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그 밖에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경비
2. 한옥 등의 보존·건축에 대한 지원
3.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

배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문화특별회계의 설치 가능성을 명시
- 해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과 한옥 등의 보전 등과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문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그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건축법』 제80조의 이행강제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그 밖에 수입금으로 할 수 있음
 - 건축문화특별회계의 용도는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 한옥 등의 보존·건축에 대한 지원,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 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기타 건축서비스산업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함
- 기대효과
 -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설치하는 건축문화특별회계를 통하여 상시적인 건축문화진흥 사업과 활동이 가능하며, 이는 지역건축문화 향상에 기여
- 입법례

* 특별회계를 설치한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등)
2.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3. 「주차장법」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4. 「도시개발법」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

7. 보칙

□ 제36조 조세의 감면

제36조(조세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개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시행을 위해 조세 감면의 근거 마련
- 해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우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제37조 자료제출

제37조(자료제출)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개요
 - 법에 근거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본 법에 의거하여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개요
 -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해설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더불어 국토해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

□ 제3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9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개요
 - 건축문화의 임직원에 대한 『형법』의 벌칙 적용은 공무원의제에 근거함을 규정
- 해설
 - 건축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용함을 명시

8. 벌칙

□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요
 -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벌칙 규정
- 해설
 - 벌칙규정은 법령문 중 형벌이나 행정벌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건축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 제41조 과태료

제4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서비스사업자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자
2.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발주자
3.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주에게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설계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개요
 - 본 법과 관련된 사항 중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
- 해설

- 과태료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방식으로 부과 및 징수된 금전을 의미함

9. 부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요
 - 법안의 공포 시행 일자에 대한 명시
- 해설
 - 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이 법안의 시행

제5장 결론

1. 연구의 의의
2. 후속 과제

1. 연구의 의의

① 연구 성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 대비

- 본 연구는 높은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기반 조성 및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건축서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을 목표로 수행
- 연구결과로 제안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2011년 10월 7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입법이 추진 중임

[표 5-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발의 후 진행 상황

일정	주요 사항
2011년 10월 7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국회 발의 (의안번호 1813358)
2011년 12월 21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304회 국회 제1차 전체회의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등
2011년 12월 24일	제304회 국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 : 상정, 축조심사

□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연속과제의 결과물

- 본 연구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진행된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일련의 과제들의 연속선상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선행 과제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김진욱 외, 2009),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 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김진욱 외, 2010),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유광흠 외, 2011) 등이 있음
- 2009년부터 3년간의 연구를 통해 국내 건축서비스에 대한 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산업으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가 진행됨
- 특히 본 연구는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유광흠 외, 2011)에서 도출된 ‘건축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제안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② 연구 추진방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도출을 위한 다층적 검토 및 단계적 진행

-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근간이 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진행됨
- 건축서비스산업의 정의, 여건 분석, 관련 법률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진흥법으로서의 의의, 기본체계, 기본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작성하고 입법취지를 정리하는 과정으로 진행됨
- 특히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법임을 고려하여 기존 타 산업분야의 진흥법 및 기본법의 입법례를 조사하여 진흥법이라는 입법 성격을 검토한 뒤 이에 근거하여 입법 타당성, 법률 체계도출, 법안 구성요소, 타법과의 관계 등을 정립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합의 과정

- 연구결과로서 제안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그리고 건축 5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새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와의 여러 차례 검토회의를 거쳐 본 법률(안)을 도출함
- 건축 5단체는 각각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에 필수적이고 시급하게 담겨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였고, 이들 단체는 소속된 건축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 이를 법안에 반영함

③ 연구 내용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필요성 고찰

- 우리나라는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대비하여 산업 전반에 걸쳐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임
- 국가의 미래를 위해 지식집약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노력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진흥정책의 범위에서 제외된 상태
- 건축서비스산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건축서비스산업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육성전략이 요구됨
-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지식집약형 산업기반을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건축문화의 부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마련 및 제정이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정리 및 현황 진단

-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건축서비스산업의 개념 및 건축서비스산업 관련 현황을 재검토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의 규율 범위를 설정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여건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 국가의 건축서비스산업의 현황과 세계 건축서비스산업시장 특성 등을 검토하여 건축서비스산업의 현재와 세계 시장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검토
- 건축서비스산업 현황은 건축설계 관련 서비스산업이 낮은 생산력을 보여주고, 평균 임금도 유사분야 중 가장 낮은 금액을 보이는 등 열악한 고용 환경을 가지고 있어 후진국 수준으로 평가되며, 세계 시장 점유율도 낮은 상태로 특히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과 제도가 미비한 실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정책 검토

- 건축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의는 『건축기본법』에서의 ‘건축’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건축물로 구성되는 공간환경을 구현하는 건축과정의 제반 서비스를 포괄함
- 현행 법제 중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이 깊은 『건축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건축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개념을 확인하고 각 법률 간의 관계를 검토
- 지식집약형 산업의 육성이 주요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지식집약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건축서비스산업은 제외된 상태임
-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특성이 간과된 채 용역계약 및 공사계약에 준하여 계약이 추진되어 산업의 특수성 고려가 미흡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체계 도출

- 국내 타 산업의 진흥법 및 기본법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산업의 진흥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체계를 도출하였으며, 법률에서 사용되는 진흥은 조성·개발·육성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임을 확인하고 법률의 제명을 제시함
- 여러 진흥법이 ‘진흥법’이라는 입법 성격에 따라 공통적인 기본체계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계획수립,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화, 연구 및 개발 지원, 사업지원, 진흥원, 통계작성, 해외진출로 구성되어, 이를 바탕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기본체계를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안 구성요소 도출

- 건축서비스산업의 특성과 주요 현안을 반영한 조문을 마련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기존 논의를 중심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마련에 관련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세부 조문을 추가하였고,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기반조성’,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추가됨
- 건축서비스산업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뿐만 아니라 건축서비스에 의해서 형성되는 건축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도출하였으며,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나 이를 지원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을 해소하고자 한옥 등의 보존 및 활용 정책을 위한 조문을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마련

- 위의 과정을 통해서 작성된 법안은 9개의 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장은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제4장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제5장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제6장 건축진

홍원 및 특별회계, 그리고 보칙, 부칙, 벌칙으로 구성됨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구분	조문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목적 • 제2조 정의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장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 실태조사 • 제7조 건축서비스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 제8조 건축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등 • 제9조 발주방식의 다양화 • 제10조 표준화 기반조성 • 제11조 지식재산권 보호 • 제12조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3장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3조 건축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 제14조 건축서비스산업의 고용 촉진 • 제15조 창업지원 • 제16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 제17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 제18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4장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0조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등 • 제21조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 제22조 설계의도 구현 • 제23조 공공건축의 품격제고 • 제24조 공공건축 지원센터
제5장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5조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6조 한옥 등의 등록 • 제27조 한옥 등의 조성·정비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제28조 국가한옥센터 설치
제6장 건축진흥원 및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9조 건축진흥원의 설립 등 • 제30조 출연금 • 제31조 자료의 제공요청 등 • 제3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33조 보고 및 검사 • 제34조 비밀엄수의 의무 • 제35조 건축문화특별회계의 설치
제7장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6조 조세의 감면 • 제37조 자료제출 • 제38조 권한의 위임·위탁 • 제39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구분	조문
제8장 벌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0조 벌칙 • 제41조 과태료
제9장 부칙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 제정을 대비한 후속과제 검토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법률로서 성립한 이후, 향후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주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를 검토함

2. 후속 과제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체계 및 절차 관련

□ 시행령, 규칙 및 조례 작성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입법취지와 성격을 반영하여 일관성 있는 법의 집행을 위해 본 법안에 근거하여 시행령, 규칙, 조례에서 제정되어야 할 사항을 선별·정리하여야 함
- 시행령 및 규칙(안) 작성 : 법률에서 명시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 형식 체계를 갖추고 법률의 집행을 효율화하고, 시대적 변화와 지역 및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성을 가지도록 세부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조례(안) 작성 : 법안 조항 중 지자체의 주체와 참여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 우선 적용이 요구되는 것을 대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체계상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분담과 업무범위를 확인하고, 조례의 적용성과 다각도의 검증을 통한 지원책 등이 모색되어야 함

□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세부규정 마련

- 법률안에서 명시한 계획, 사업 및 조직 등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각각에 대한 체계, 세부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계획이나 사업의 집행을 위한 행정 운영의 체계, 절차, 조직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하여 법률의 실행력과 담당조직의 집행력을 도모
- 위와 관련하여 시범 적용과 지침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조직을 형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기준과 및 이에 대한 근거를 함께 규정할 필요
- 이들의 내용을 법률 체계에 적합하도록 시행령, 규칙, 조례 등에 배치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되어 절차적 요건이 법률 체계에 부합되는 것이 요구됨

□ 단계별 추진 방안

- 시행 준비
 - 시행령, 규칙, 조례를 작성하고 법률 안에 명시된 계획, 사업, 제도 등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실태조사 방안, 진흥시설 지정, 우수 건축물 지정 제도 등 법률안에서 명시된 계획, 사업, 제도 등에 대한 추진방안 마련
 - 공공건축 지원센터, 건축진흥원 등 관련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에 따른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강화
- 적용 및 고도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집행과 법률안에 명시된 기본계획, 주요 사업, 조직 등을 기준이나 지침 그리고 계획안에 따라 실제로 추

진하도록 함

- 운영 과정에서 활발한 모니터링과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다양한 주체로부터의 의견수렴을 통해 법률의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정착 및 확산

- 계획안 작성과 이의 실행, 그리고 평가 및 반영을 통해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법률이 정착되고 집행력이 확산될 것임

□ 지원 시스템 구축

- 전문가와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령, 규칙, 조례, 계획, 사업 및 제도의 세부적 기준, 수립 지침 및 작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갱신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대하여 국민, 관련 분야, 행정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의 주요내용 관련

□ 건축서비스산업 정책방향 결정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의 수립으로 명시된 사항들에 대한 기본계획 내용과 보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한 검토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기반 조성

- 건축서비스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기반을 법안에서 우선적으로 명시함. 이에 해당하는 것이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 정보체계의 구축, 연구개발, 발주방식의 다양화, 표준화, 지식재산권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등임

- 건축서비스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 주기, 대상, 내용 등의 구체적 사항, 법률안에서 명시한 정보체계 구축 방법,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과의 연계 방법 등에 대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 또한 연구개발에 포괄되는 내용, 추진체계 구성안, 재정지원 방안, 연구성과의 이용보급 및 연계 방안 등에 대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
- 발주의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한 발주방식 및 공모방식의 선정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되고, 시행 시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한 후속작업이 필요
- 법안에서 명시한 표준화의 대상, 범위 및 방법과 운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화 작업과 건축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실행방안과 이와 관련되는 현행 제도의 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의 실행방안과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정비 작업이 진행되어야 함

□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인력의 양성, 고용촉진, 창업지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이 법안에 포함됨
-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을 위한 시책과 지원 방안, 창업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 및 시행이 필요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효율적 운영 및 지원 방안,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법에 대한 추가적 작업이 요구됨

□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 건축문화 향상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모색하고자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 우수 건축물 등의 지정 및 지원, 설계의도 구

현, 공공건축의 품격제고 및 공공건축 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지역 건축문화의 보존을 위한 주요 사항 및 실행방안, 우수 건축물 지정 제도 운영 및 지원 방안, 건축가의 설계 후 건축 과정에 대한 구체적 참여 방안, 공공건축 관련 심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방안, 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방안 등의 계획과 연구가 필요

□ 한옥 등의 보존 및 진흥

- 고유한 건축문화 자산인 한옥 및 전통 공간환경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한옥진흥기본계획의 수립, 한옥 등의 등록, 한옥 등의 조성·정비사업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국가한옥센터 설치를 법안에서 명시
- 관련하여 한옥진흥기본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및 기존 연구와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기타 법에서 규정한 사업에 대한 실행방안 마련, 국가한옥센터 등 기구의 운영에 관한 연구 및 계획 필요

□ 건축진흥원

- 건축서비스산업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체계인 건축진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진흥원의 설립 및 담당 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근거, 사업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요청,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보고 및 검사 등을 법에서 명시
- 각 규정에서 하위 법률 체계로 위임된 구체적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작성이 필요하고 진흥원의 설립을 위한 타 분야 진흥원 설치 및 운영사례 검토를 통해 세부 계획 수립이 요구

참고문헌

□ 문헌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2007), 「좋은 건축 좋은 도시 한국을 만든다」,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 국토해양부(2008), 「한옥건축 진흥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연구」,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2008), 「한옥마을 조성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 권영상 외(2009), 「근대건축물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광현(2006), 「건축기본법 연구」, 대한건축학회.
- 김범주(2010), 「쉬운 법 편안한 생활 법과 사회」, 형설출판사.
- 김성홍 외(2004),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김진욱 외(2009),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산업동향조사 및 활성화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욱 외(2009), 「공공건축 설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디자인행정 지원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김진욱 외(2010), 「녹색성장을 위한 건축관련 법·제도정비에 관한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박상기 외(2010), 「법학개론」, 박영사.
- 서수정 외(2011), 「국가 공공건축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서종철(2009), “국내 건설 공공발주에서 BIM의 도입 및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에 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 손홍수(2008), “미국에서의 건축저작권”, 「저스티스」, v.108, pp.131~163.

- 엄철호 외(2010), 「공공건축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프로세스 개선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유광흠 외(2011), 「건축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 윤춘섭(2006), “건축저작권법 제정 이후 미국의 건축저작물 보호에 대한 현황 및 판례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대한건축학회.
- 조명래(2007), “우리의 공공건축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건축설계포럼 발제자료집」,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조준배 외(2008), 「장소 가치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진미석(2008), 「산업기술관점에서의 지식서비스 인력 양성방안」,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주연 외(2009), “BIM 적용을 통한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표준화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2007), 「행정중심복합도시 좋은 건축물 지정제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Kevin Culbert(2010), 「IBIS World Industry Report 54131 Architectural Services in the US」, IBIS World.

□ 웹사이트

-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http://www.kira.or.kr>.
- 베이징올림픽 개최위원회, 「The official website of the Beijing 2008 Olympic Games」, <http://en.beijing2008.cn>.
- 예술경영 지원센터, 「예술경영」, <http://webzine.gokams.or.kr>.
- 일본 총무성,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http://www.soumu.go.jp>.
- 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DB」, <http://db.kosbi.re.kr>.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Arcspace, 「Online Architecture」, <http://www.arcspace.com>.
- Galinsky, 「Galinsky」, <http://www.galinsky.com>.
- NAICS Association, 「NAICS Association」, <http://www.naics.com>.
-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National Trust for Historic Preservation」, <http://www.preservationnation.org>.
- The McGraw-Hill Companies, 「Engineering News-Record」, <http://www.enr.com>.

그림 출처

[그림 1-1] <http://www.wallpapers.brothersoft.com>.

[그림 1-2] <http://www.shanghaibao.com>.

[그림 2-2] <http://www.forums.gametrailers.com>.

[그림 2-5] <http://www.flickr.com>.

[그림 2-8] <http://www.michaelmuramoto.com>.

[그림 2-10] <http://www.lifeinstudio.blogspot.com>.

[그림 2-11] <http://www.archdoc.mr926.me>.

[그림 3-1] <http://www.beijing2008.cn>.

[그림 3-2] <http://cocktail-textcube.blogspot.com>.

[그림 3-4] <http://www.urbanplacesandspaces.com>.

[그림 3-5] <http://www.publicbroadcasting.net>.

[그림 3-6] <http://100.naver.com>.

[그림 3-7] <http://www.camk.or.jp>.

[그림 3-8] <http://www.earthhouse.or.kr>.

[그림 3-12] 손영선(2007), 「행복이 가득한 집」, v.9.

[그림 3-13] <http://tour.jeonju.go.kr>.

A Study on the Enactment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Yu, Kwang Heum
Jin, Hyun Young
Kim, Hye Ryeon

Korea is at the stage of transferring toward knowledge-intensive industry in order to prepare for GNP 30,000 dollars period. Thus there has been many efforts about the knowledge-intensive industry in many fields for the future. Related this situation, architectural service, which is the topic in this study, has been evaluated as a knowledge-intensive industry with high value added and employment creation effect. The promo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means not only to move forward knowledge-intensive industry as a new growth engine, but also to improve national dignity through its enhanced national brand value.

The promo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is significant and urgent since architectural service in domestic has poor environment and low competitiveness in spite of its potentiality. Thus this study is for drafting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that is the fundament for systems and polici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defini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and analyzed its domestic and foreign conditions, and examined the connection with other acts in a relation to architectural service. Through this process, this research drew the meaning, basic structure and important contents of the promotion act. Based on these, it prepared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and interpreted it.

The defini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means whole service on

the architectural process realizing the physical environment by buildings based on ‘Framework Act on Building’. This study defines it as professional knowledge and technology that provide service in the life-cycle of a building from its plan, design, construction, maintenance to demolition.

The market size of domestic architectural service is about 1 trillion won. And the proposition of top large companies with over 100 employees is 1.3%, but it comprises 30.5% of building and landscape design service sales, which shows the unequal distribution. The sales of architectural service, especially building design service, represents the low productivity per business or per person compared with other similar businesses. Also the average wage is the lowest in related fields.

Despit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of many industries in Korea, architectural service have had low global competitiveness. The amount of sales per company has been ranked in the 21st among 27 OECD countries. And compared with the average 0.77\$M/company in OECD countries, and 0.81\$M/company in G7, that in Korea is 0.43\$M/company which is almost half. The amount of several large architectural firms’ sales may be compatible with overseas companies, but those companies’ oversea advancement is very insignificant.

In enacting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Framework Act on Building’,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nd ‘Certified Architects Act’ were reviewed and the relation among acts were considered. Plus as a result of policies and systems review, engineering industry has been determined as a new growth knowledge industry and ‘Engineering Industry Activation Plan’ has been presented, but architectural service has not been included in it. Although the architectural service is a knowledge-oriented industry, it has been contracted based on service and construction contract following ‘Method on Contracts to the State is a Party’ and ‘Accounting Regulation’,

and no design fee is calculated separately as there is not the clear guideline of design criteria in the building construction. Therefore it has problems of contractual structure.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it reviewed a legislation type, and named as 'promotion act' based on the act's fitness, stability and relations among legal ideas. While many promotion acts includ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ustry, these have the same legislative structure as industrial promotion act consisting of basic plans, professional fosterag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R&D support, project support, promotion institute, statistics and overseas advancement, and drew promotion act(plan) considering industrial aspects of architectural service.

Based on the basic system of promotion act, in order to select provisions according to architectural service, this study had consultations with affiliated persons on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and through this process, 'diversification of ordering system', 'establishment foundation for standard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re primarily chosen. In company with the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architectural service, contents to improve architectural culture formed by architectural service were included such as articles of 'preservation of local architectural culture', 'designation system of excellent buildings', 'realization of design intention', 'improvement of public buildings' quality', and 'support center for public buildings'. And as following the traditional culture have had wide attractions in a global era, interests about our traditional buildings have increased in Korea. However the legal system to promote or support it is insufficient. Thus in order to support coherent traditional building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foundation, etc. of basic plans for Hanok promotion', 'registration of Hanok', 'construction projects and fosterage of professional resources for Hanok' and 'establishment of national Hanok center' were in the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This act consists of 9 chapters and 41 articles. It is comprised of chapter 1 ‘General’, chapter 2 ‘Establishment the Founda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chapter 3 ‘Activa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chapter 4 ‘Promo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through the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Culture’, chapter 5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Hanok’, chapter 6 ‘Architecture Promotion Institute and Special Accounting’, ‘Supplementary Provisions’, ‘Penalty Provisions’ and Addenda. The provisions of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are as follows.

The legal foundation to respond the restructuring for knowledge-intensive industries as well as to establish architectural service as a new growth industry is required. Thus this study drew the act by reviewing condition analysis, related acts and legal features so as to prepare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It is expected to develop domestic architectural service by means of additional supports in the next legislation process.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Plan)]

Division	Provision
Chapter 1 Gener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1. Purpose • Article 2. Definitions •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State, etc. • Article 4. Relation with Other Acts • Article 5. Foundation, etc. of Basic Plans for Promo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Chapter 2 Establishment the Founda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6.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 Article 7. Establishment Inform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Service • Article 8. Research and Development of Architectural Service, etc. • Article 9. Diversification of Ordering System • Article 10. Establishment Foundation for Standardization • Article 11.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ticle 12. Fair Business Order
Chapter 3 Activa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13. Fostering, etc. of Professional Resources for Architectural Service • Article 14. Employment Promo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 Article 15. Support for Business Establishment • Article 16. Designation, etc. as Facilities to Promote

Division	Provision
	<p style="text-align: center;">Architectural Servi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17, Cancellation of Designation as Promotional facilities • Article 18, Local Authorities's Support to Promotional facilities • Article 19, Supports for Overseas Advan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p style="text-align: center;">Chapter 4 Promotion of Architectural Service through Improvement of Architectural Cul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20, Preservation of Local Architectural Culture • Article 21, Designation and Support of Excellent Building etc. • Article 22, Realization of Design Intention • Article 23, Improvement of Public Buildings' Quality • Article 24, Support Center for Public Buildings
<p style="text-align: center;">Chapter 5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Hanok</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25, Foundation, etc. of Basic Plans for Hanok Promotion • Article 26, Registration of Hanok • Article 27, Construction Projects of Hanok, etc. and Fosterage of Professional Resources • Article 28, Establishment of National Hanok Center
<p style="text-align: center;">chapter 6 Architecture Promotion Institute and Special Account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29, Establishment, etc. of Architecture Promotion Institute • Article 30, Contribution • Article 31, Request for Provisions, etc. of Data or Materials • Article 32, Submission of Business Plan, etc. • Article 33, Reporting and Inspection • Article 34, Obligation of Confidentiality • Article 35, Installation of Architectural Culture Special Accounting
<p style="text-align: center;">Chapter 7 Supplementary Provis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36, Tax Reduction • Article 37, Resource Submission • Article 3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 Article 39, Legal Fiction as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p style="text-align: center;">Chapter 8 Penalty Provision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rticle 40, Penal Provisions • Article 41, Fines for Negligence
<p style="text-align: center;">Chapter 9 Addenda</p>	

Keywords :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Architectural Service Promotion Act, Enactment